

SP 2014-08-242

# 20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일자 | 2014. 6. 26(목) ~ 6. 27(금)

장소 |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개최 일정

### 1. 개최 일정

- 📅 일자 : 2014. 6. 26(목) ~ 6. 27(금) (1박2일)
- 📍 장소 :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 2. 주 제

- 🎯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 3. 일 정

#### 📅 제1일(6월 26일)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	등 록	
14:30~15:00	개회식 - 개회사 : 대교협 김준영 회장 - 신입 총장 소개 - 임시총회(신규 회원 가입안)	다이너스티홀 (2F)
15:00~16:30	<b>대학의 현안 및 쟁점 과제 발표</b> · 대학 구조개혁 분야 : 노석균 총장 (영남대) · 대학 재정 분야 : 남궁근 총장 (서울과기대)	
16:30~17:30	<b>현안 종합 토론 및 정책 건의</b>	
17:30~18:00	Coffee Break	
18:00~19:30	만찬 (교육부장관 초청)	

#### 📅 제2일(6월 27일)

시 간	내 용	비 고
09:30~11:40	<b>정부 및 대학간 협력을 통한 대학 발전</b> · 대학간 자원 공유 : 홍승용 총장 (덕성여대) ·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 윤종록 제2차관 - 교육부 : 나승일 차관	다이너스티홀 (2F)
11:40~12:00	객실 체크인 준비	
12:00~13:30	오찬 (미래창조과학부 후원)	토치홀 (1F)

\* 상기 일정은 행사 진행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최 일정	3
------------------------	---

개 회 사	7
-------	---

김 준 영 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의 현안 및 쟁점 과제 발표	11
-------------------	----

📍 주제발표 I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13

노 석 균 총장(영남대학교)

📍 주제발표 II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 ..... 47

남 궁 근 총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주제발표 III

대학간 창조적 협업 전략방안 ..... 73

홍 승 용 총장(덕성여자대학교)



# 개 회 사

김 준 영 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개 회 사

2014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시느라고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께 감사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고등교육 발전과 育英報國의 큰 짐을 지시고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총장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논어에 任重道遠(임중도원)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입니다. 한국 대학의 現 생태야말로 任重道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기반 위축, 교육의 질 후퇴, 빗장 쳐진 교육규제 등 우리 고등교육 생태계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총장님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2014년도 하계대학총장세미나는 우선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담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총장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감소는 한국 고등교육 생태계에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구조개혁에 있고, 그 질적인 대학 구조개혁은 21세기 교육강국으로서 한국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비전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은 일과성이 아닌 한국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부와 대학간의 協治의 인프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는 더욱 심도 있고 체계적인 담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발전총장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동안 수차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세 가지로 주제를 압축하여 오늘 총장님들과 함께 담론하게 됩니다.

오늘 첫번째 주제는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로서 대학 구조개혁의 문제와 쟁점 및 평가,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대학 구조개혁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입니다. 두번째 주제는 대학 재정과 관련하여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으로서 반값 등록금 정책의 고등교육 파급 효과와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쟁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국가장학금 정책을 재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논의하게 될 세번째 주제는 「대학간 창조적 협업 전략방안」

입니다. 대학내 구조개혁과 함께 국내 대학간 창조적 교류, 협업을 통하여 대학 구조개혁기에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간 협력의 시너지를 더하는 것은 상호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구조개혁의 비용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장님들께서도 대학간 창조적 협력의 네트워킹에 동참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고등교육 관련 주요 정책설명, 토론의 장도 새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논의하게 될 주제가 매우 중요하고 무겁지만 총장님들께서 품고 계시는 고견과 담론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교협은 우리 대학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담론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총장님들께서 다소 부족하게 느끼실 부분도 있겠으나, 우리 대교협은 대학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고등교육에 관한 건실한 여론을 형성하는 일 등 회원대학의 조력자로서 충실히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과제와 방안을 탐색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귀하신 시간을 내셔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대학 총장님들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준비에 정성을 쏟아준 대교협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 준 영**

# 대학의 현안 및 쟁점 과제 발표

-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
- 대학 간 창조적 협업 전략방안

[ 대학발전총장위원회 ]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주제발표 I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발표 : 대학발전총장위원회  
노석균 총장(영남대학교)



---

# 목 차

---

I.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현황과 동향 .....	16
1.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현황 .....	16
2.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사회 및 대학의 동향 .....	18
3. 구조개혁법안의 분석 .....	19
II.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와 쟁점 .....	23
1. 대학구조개혁 추진의 문제와 쟁점 .....	23
2.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문제 .....	27
III.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29
1. 대학구조개혁의 비전과 방향 .....	29
2. 대학구조개혁 추진전략과 과제 .....	30
[부록]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36

---

# I.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현황과 동향

## 1.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현황

### □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 학령인구의 감소로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23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현재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 입학정원의 미충원이 급격히 증가
- 입학자원 부족으로 상당수의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 상당수의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존립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는 고등교육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임.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

- 최근까지 지속적인 대학입학정원의 증가로 고등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많
- 음. 이에 따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최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반값 등록금 도입 등으로 국민 혈세가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대학 전반의 교육수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대학 경쟁력 제고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평가체제가 필요함.
-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사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실시함.
  - 공통지표(예):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창업,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



- 설, 대학(법인) 운영,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공헌, 교육성과 등
- 특성화지표(예):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성과 및 계획
- 대학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 정원 감축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를 실행하고자 함.

〈표 3〉 평가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등 급	구조개혁 조치
최우수	정원 자율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우수	정원 일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보통	정원 평균 수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미흡	정원 평균 이상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I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매우미흡	정원 대폭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I·II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의 차등적 감축

- 정원감축을 위해 2022년까지 3주기로 구분하여 주기마다 모든 대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정원감축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16만명까지 감축하되, 평가등급에 따라 최 우수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실시함.

〈표 4〉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평가주기	1주기(2014~2016)	2주기(2017~2019)	3주기(2020~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2015~2017학년도	2018~2020학년도	2021~2023학년도

-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주기 정원 감축 시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63:37)을 반영하여 대학 25,300명, 전문대 14,700명으로 구분하여 감축함.

## □ 지속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구조개혁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교육부는 비상설 평가단 운영 등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를 수행함.
-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지속적·안정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법률의 주요 내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 정원 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기준 초과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 법인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 경로 등
-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대학신설 억제에 위한 인가요건을 강화하고, 그동안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평가는 금년에 한하여 실시하며, 2014년 구조개혁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함.

## 2.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사회 및 대학의 동향

### □ 입학자원 급감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 공감

-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대학사회의 위기의식이 팽배하여 그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높음.
- 그러나 현재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과 바람직한 구조개혁 간에는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음

### □ 현행 교육부 중심 대학구조개혁방식에 대한 비판

-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와 등급화를 위한 강압적 평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수도권대학에 비해 인프라와 재정이 취약한 지방대학에서는 구조개혁평가와 그에 기초한 정원감축 방식에 대해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인식이 팽배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학구조개혁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

### □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한 비판

-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

관적 시각이 많음.

- 정원 감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구조개혁을 통해 실현하려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음.
-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조항이 부실사학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음.
- 대학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이라는 지적이 있음.
- 대학구조개혁은 새로운 법률 제정이 아니고도 기존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음.

#### □ 대학유형별 · 지역별 · 설립별 시각 차이

- 4년제 대학은 대학정원 위기가 일정 부분 전문대학 특성화정책 등을 통해 전문대학을 2-4년제화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주기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의 감축 비중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 2013년도 기준 미충원 인원의 96.0%가 지방대학이고, 이 중에서 지방의 전문대학이 51.5%임. 따라서 현재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 전문대학의 충원율은 대학의 충원율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학의 위기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전문대학은 2018년 충원율이 84.3%로 떨어지고, 2023년 53.3%, 2025년 51.7%, 2030년 43.3%, 2035년 35.3%, 2040년 27.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배상훈 외, 2014).
- 비수도권대학들은 구조개혁 평가지표들이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구조개혁방안이 지방대학 죽이기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 ※ 2013년 이후 지역별 충원율을 전망해보면, 수도권-제주권-동남권-호남권-대경권-충청권-강원권 순으로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사립대학들은 재정과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공·사립대학을 동일하게 기준으로 평가하여 구조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음.

### 3. 구조개혁법안의 분석

#### 1) 구조개혁법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 □ 법안의 제안 배경

- 대학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현재의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대학입학자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이를 방지할 경우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중 상당수의 존립이 어려워지게 되어 학생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

-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혁법안)의 제정을 통해 대학의 양적 규모는 축소하되,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 자체평가 실시 및 보고
  - 대학의 장은 대학의 발전계획·교육여건·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 실시(안 제4조)
  - 자체평가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안 제4조).
- 대학평가 실시 및 활용
  - 교육부장관은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을 평가할 수 있고, 대학 평가의 결과를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안 제5조)
  - 대학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 교육부장관은 대학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안 제15조).
  -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안 제15조)
- 대학구조조정 실시 및 그에 따른 조치와 제재
  - 교육부장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에 학생정원 감축·조정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명령 또는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의 불이익(안 제17조).
  -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안 제18조).
-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 및 특례
  -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 가능(안 제23조).
  -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함에 있어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 미적용(안 제25조).

-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이하게 용도 변경(안 제26조).
-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면직된 교직원을 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 채용 및 교직원의 감축에 따른 적절한 보상(안 제29조).
- 국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대학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따른 재적생의 보호를 위한 편입학 등 지원대책 마련(안 제30조).

## 2) 구조개혁법안과 유사 법안의 비교

### □ 구조개혁과 관련한 법률안 검토

- 최근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로 3개의 법률안이 제안되었음.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희정 의원 외 19인, 2014.4.30. 이하 김희정법안)
  -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병주 외 9인, 2012.7.27. 이하 민병주법안)
  -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외 10인, 2010.5.6. 이하 김선동법안)
- 법안의 제안 배경은 대체로 동일함. 즉, 대학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들의 존립 위기를 방지하는 경우, 학생들의 피해가 야기되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므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선과 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제시하고 점이 동일함.
- 김선동법안과 민병주법안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김희정법안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평가와 그에 기초한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 추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름.

### □ 3개 법률안 비교

- 김희정법안과 민병주·김선동법안은 다소 차이가 있고, 민병주법안과 김선동법안은 거의 동일함.
  - ※ 민병주법안과 김선동법안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과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김희정법안은 모든 대학에 대해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평가와 자율적 유도보다는 강압적 구조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김희정법안, 민병주법안, 김선동법안의 명칭과 특징, 주요내용과 장점 및 문제점을 비교·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3개 관련 법률안 비교

구분	김희정 외 19인 (2014.4.30.)	민병주 외 9인 (2012.7.27.)	김선동 외 10인 (2010.5.6.)
명칭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34조와 부칙</li> <li>•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와 구조개혁 실시</li> <li>• 사립대학의 구조 개혁을 위한 지원</li> <li>• 합병 및 해산시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27조와 부칙</li> <li>•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li> <li>• 자율적 구조개선 지원</li> <li>• 합병 및 해산시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34조와 부칙</li> <li>•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li> <li>• 자율적 구조개선 지원</li> <li>• 합병 및 해산시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li> <li>•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결과 활용</li> <li>• 대학평가위원회 설치</li> <li>•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3년 주기)</li> <li>• 대학구조개혁 자체계획 수립·시행</li> <li>• 대학구조개혁 조치 및 이행 명령</li> <li>•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li> <li>•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특례</li> <li>•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기본재산 전환</li> <li>• 교직원과 재학생의 신분 보장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 설치·운영</li> <li>•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li> <li>• 사립대학의 자율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점검</li> <li>• 경영진단지표의 설정과 정부재정지원대학 지정</li> <li>• 경영부실대학의 지정 및 구조 개선조치</li> <li>• 자율구조개선계획의 지원</li> <li>• 통·폐합 지원</li> <li>• 합병교부금의 지급</li> <li>•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특례</li> <li>• 교직원과 재학생의 신분 보장 지원</li> <li>• 사립대학 구조개선기금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 설치·운영</li> <li>•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li> <li>• 사립대학의 자율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점검</li> <li>• 경영진단지표의 설정과 정부재정지원대학 지정</li> <li>• 경영부실대학의 지정 및 구조 개선조치</li> <li>• 자율구조개선계획의 지원</li> <li>• 통·폐합 지원</li> <li>• 합병교부금의 지급</li> <li>•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특례</li> <li>• 교직원과 재학생의 신분 보장 지원</li> <li>• 사립대학 구조개선기금 설치</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사학의 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li> <li>• 평가와 강제 이행조치를 통한 대학구조개혁의 가속화</li> <li>•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사학의 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li> <li>•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li> <li>• 사립대학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사학의 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li> <li>•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li> <li>• 사립대학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대책</li> </ul>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대학평가</li> <li>• 정부의 대학통제 강화</li> <li>• 자율적 유도보다는 강압적 구조 개혁</li> <li>• 부실사학에 대한 특혜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학진흥기금 출연 예산 확보 문제</li> <li>• 부실사학에 대한 특혜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문제</li> <li>• 부실사학에 대한 특혜 제공</li> </ul>

## II.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와 쟁점

### 1. 대학구조개혁 추진의 문제와 쟁점

#### 1) 대학발전 비전 없는 정원 감축만을 위한 구조개혁

##### □ 대학입학자원의 급감

- 향후 대학입학자원의 급감에 따라 미충원 대학이 증가하여 많은 대학들이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수가 역전되고 2020년 이후에는 초과정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고교졸업생수(명) 전망: 63.1만(2013) → 54.9만(2018) → 39.7만(2023) → 40.9만(2025)
  - 미충원 규모(천명) 전망: 38.3(2017) → 88.2(2020) → 160.8(2023) → 162.9(2026)



## □ 대학발전 비전의 부재

- 대학구조개혁방안은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에 치중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비전을 찾아보기 어려움.
- 현재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방안에는 대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그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선언적 목적만이 제시되어 있음.
-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나 비전이 부재한 상황임.

## 2) 교육부 주도 평가와 그에 기초한 강제적 구조개혁

### □ 대학의 양적 확대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고민 결여

- 현재와 같은 대학의 양적 팽창과 공급 과잉은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한 대학 설립 조건 완화에 기인한 측면이 많음.
- 정부에서는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한 대학설립 자유화 정책을 통해 대학수용인력을 확대하여 대학진학수요에 부응하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와 우수대학 육성을 기대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실패 책임이 정부(교육부)에 있음에도 그에 대한 반성과 분석 없이, 입학자원의 감소를 빌미로 강제적인 양적 감축을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학에서는 반발이 많음.

### □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관 주도 대학평가 우려

- 대학기관인증평가나 프로그램인증평가 등과 같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학평가를 무시하고, 관 주도의 평가가 우려됨
  - ※ 최근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선정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와 부패 등이 적발된 부실대학 23개교에 582억원을 지원하여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2014.5.16).
- 대학과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지표를 통해 획일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임.



□ 자율적 개선 유도보다는 강제 조치 위주의 관료적 구조개혁

- 대학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지원하기보다는 교육부 계획에 따른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구조개혁을 시도하고 있음.
- 대학과 지역 특성 등을 무시한 동일한 기준과 지표에 의한 구조개혁평가를 토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 ※ 감사원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 중 전임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의 지표가 대학특성,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함.
- 교육부의 통제 중심의 관료적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 ※ 국공립대 ACE 평가항목으로 ‘총장직선제 폐지’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대학운동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은 그 대표적인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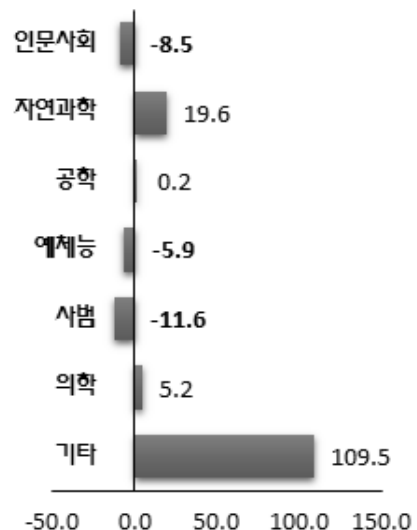
□ 지원 없는 강압적 구조개혁과 대학의 일방적 희생 감수

-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 없이 대학입학정원 축소 등 대학의 희생이 따르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감축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통폐합이나 폐교 등을 추진하거나 그를 촉진·유도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미흡한 상황임.

3) 기초학문의 몰락 및 대학교육의 획일화

□ 기초학문 분야의 쇠락

- 실용학문, 응용학문 중심의 평가에 기초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구조개혁으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과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초학문 분야임.
- 결국 실용학문 위주의 대학구조개혁으로 인문사회계열의 학문분야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에서 제공된 2008년과 2015년 대입자료에 따른 입학정원의 증감률을 보면, 2008년 대비 2015년 4년제 국·공립·사립대 입학정원은 342,967명에서 339,206명으로 3,7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계열별로 살펴보면,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 사범계열의 입학정원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계열(융복합계열 등)과 자연과학계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의학계열과 공학계열에서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3] 2008년 대비 2015년 계열별 학생수 증감률

## □ 대학교육의 획일화

- 모든 대학에 대해 거의 동일한 평가지표를 통해 획일적으로 평가함.
- 이에 따라 대학특성화를 도모한다는 천명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다양화·특성화·개성화되기보다는 획일화·서열화되고 있음.

## 4)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저해

### □ 대학의 지역경제 효과

- 대학의 존재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
  - ※ 누리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소재한 시군구가 그렇지 않은 시군구에 비하여 지방세 수입액은 평균 21억 9천만원, 사업체수는 평균 24.1개, 산업체 종사자수는 평균 638.5명, 재정자립도는 평균 0.468%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김현철, 2007).
- 대학의 존재는 지역경제 소득 창출에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 ※ 강원발전연구원(황규선, 2008)의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한림대학교 한 곳만으로도, 지역소득 창출효과는 연간 직접소득 487-607억원, 간접소득 471억원, 유도소득 546억원-615억원으로, 연간 총 1,504-1,693억원에 달하며, 이를 지역에 창출되는 영구적인 소득흐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2조 8,758억원에서 최대 3조 2,362억원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의 존재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양성과 공급에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 ※ 강원발전연구원(황규선, 2008)의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한림대학교 한 곳만으로도, 인적자원의 양성·공급은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을 최대 0.04년 상승시키고, 이는 지역의 생산성을 0.12% 정도 증가시켜 GRDP 236억원에 상당하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화폐임금으로 측정하여 인적자원 양성과 공급에 주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약 346~368억원임.

### □ 대학 폐교는 지역경제의 위축 야기

- 대학정원의 감축과 대학퇴출은 대학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황폐화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 대학의 통폐합 혹은 폐교는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지역사회의 공동화를 야기하고 있음.
  - ※ 밀양대의 부산대 통합 후 밀양지역 황폐화
  - ※ 극동정보대 폐교(1999) 후 지역상권 공동화

## 2.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문제

### 1)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성 침해

#### □ 대학 자율성 보장은 헌법적 권리

- 헌법 31조 제4항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구조개혁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음.
- 따라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근거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법률임.

#### □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 관련 법률 조항과의 모순

- 대학의 학문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대학 자율성에 기초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 대학평가 관련 법령 등의 개정과 함께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보완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 2) 자율적 대학평가 노력의 유명무실화

#### □ 교육부 주도의 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대학평가 본질 훼손

- 대학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보다는 대학통제 중심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구조개혁과 대학평가는 그 목적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학인증평가 기능과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기능을 무력화하고 유명무실화하는 문제가 있음.
- 구조개혁법률안은 현재의 자율적 대학평가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음.
  - 대학평가 관련 법령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
  - 현재의 법령은 대학평가를 인증기관에서 실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율평가체제를 유지하면서 구조개혁과 퇴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전환 및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등교육법] 대학평가 관련 조항

-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부실 사학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한 대책 미흡

#### □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전환은 특혜라는 논란 대처 미흡

- 법률안에 의하면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사학법인이 경영 악화를 방지하고 정원 미달을 유도하여 유휴 교육용 재산을 증가시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제기
- 이런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대책이 미흡

#### □ 잔여재산 귀속 특례는 부실 사학재단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 대처 미흡

- 학교법인 해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미적용한다는 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부실 재단에 주는 특혜라는 우려가 있음.
-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부실사학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잔여 재산의 일부 귀속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리·감독 기제(회계 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 사전 심의위원회 운영 등) 부재

### Ⅲ.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1. 대학구조개혁의 비전과 방향

대학구조개혁은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정원 감축만이 부각되어 있고, 대학 교육의 발전이나 경쟁력 강화 등 개혁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함. 이에 이하에서 대학의 입장에서 향후 대학구조개혁 추진의 비전과 핵심가치, 그 방향 및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함.

##### 1)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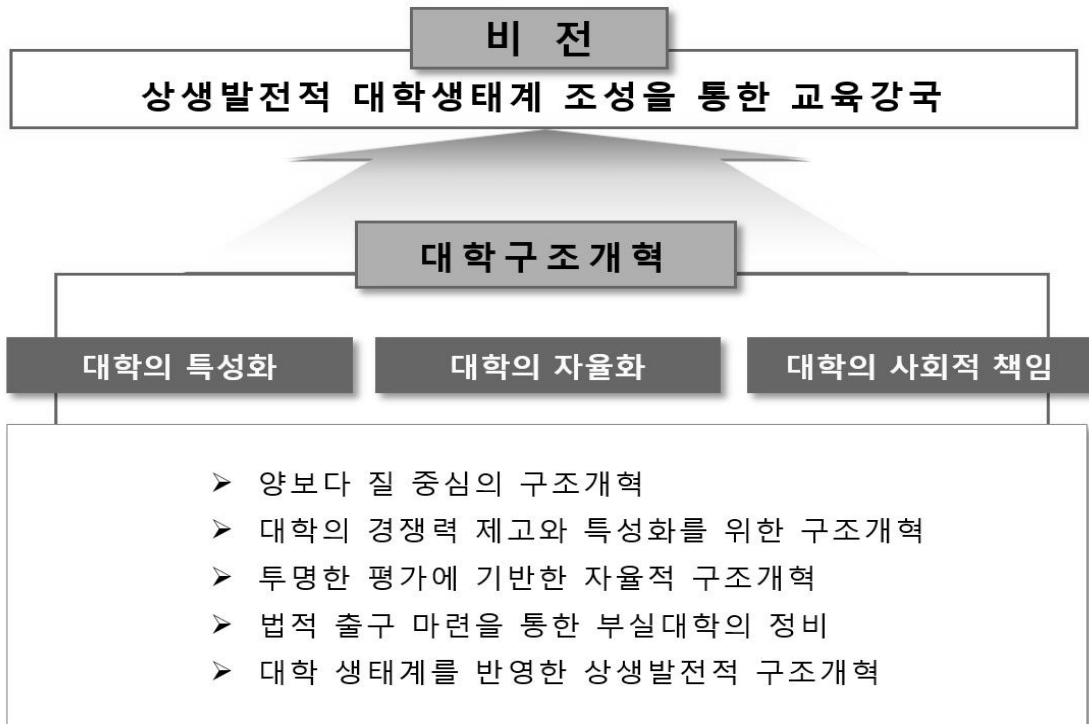
상생발전적 대학생태계 조성을 통한 고등교육 강국

##### 2) 핵심가치와 전략

- 대학의 특성화
- 대학의 자율화
- 대학의 사회적 책무

##### 3) 추진 방향

- 양보다 질 중심의 구조개혁
-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 투명한 평가에 기반한 자율적 구조개혁
- 법적 출구 마련을 통한 부실대학의 정비
- 대학 생태계를 반영한 상생 발전적 구조개혁



## 2. 대학구조개혁 추진전략과 과제

### 1) 대학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구조개혁 추진

#### □ 입학자원 감소를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로 활용

- 대학입학자원 감축을 대학의 질과 여건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교수 대 학생비율은 27.1명으로 OECD내에서 최하위 수준임.
  - ※ 미국 하버드대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은 1: 2,64인 반면, 서울대는 1: 11,7명임.
  - ※ 직원 대 학생 비율은 미국 코넬대 1:1,73명, 미주리대 1:2,8명, 위스콘신대 1:2,36명, 하버드대 1:0,54명인 반면, 서울대는 1:19,9임.
- 우리나라 대학진학열은 향후에도 감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학 규모의 축소를 통한 현상 유지보다는, 대학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도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입학자원 감소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대학역할과 기능 확대

- 고등교육기관을 학령인구 대상 교육기관에서 HRD기관으로 육성함.

- 평생교육대학, 산업인력개발대학 등으로 역할 확대
- 해외대학생 유치 등을 통한 교육수출국으로의 발전 등 추진
- HRD 활성화, 해외유학생 유치, 해외인력개발교육 등을 위한 관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대학-기업 간 유대협력의 강화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육수요와 인력개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2) 지역사회 및 대학특성을 고려한 구조개혁

### □ 대학특성과 역할에 기반을 둔 구조개혁

-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이 유사한 학문분야에 대하여 투자·경쟁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임.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여 교육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구조개혁의 추진이 필요함
- 국립대는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힘든 분야인 순수·기초학문분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사립대는 실용학문과 지역산업과의 관련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함.
  - 국립대와 사립대 비중을 고려하여 국공립대 정원감축 목표와 사립대 정원감축 목표를 각각 설정하여 정원 감축을 추진함.
-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평생교육중심대학, 특수목적대학 등의 유형별로 별도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교육여건 및 학생충원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더 어려운 상황이므로 100개 특성화 전문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업연한 4년 확대 등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전문대학이 4년제화 되는 경우,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균형 발전은 무망함.

### □ 광역경제권역별 정원 감축 가이드라인 설정 후 지역 내 대학 간 자율 감축

- 학령인구 추이 등을 감안하여 광역경제권역별 총정원 감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지역 내 대학들 간의 평가를 통하여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함.
- 지역 내 대학 간의 기여도와 경쟁력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정원 감축을 추진함.

- 수도권외의 경우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총정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원 감축을 추진함.

### 3) 구조개혁 평가방식과 평가지표의 개선

#### □ 인증평가 연계 및 결과 활용

- 대학의 총체적 질을 판단하고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인 대학인증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 대학인증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함.
  - 미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우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인증대학과 미인증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차별적 추진
- 대학인증평가와 대학구조개혁을 연계하여 대학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인증평가와 구조개혁평가의 상호 시너지 도출
  - 인증평가 수행과정에서 구조개혁을 반영하는 지표 개발과 적용

#### □ 평가지표의 개선

- 평가지표 개발의 방향 설정
  -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는 구조개혁에 필요한 기본 지표로 최소화
  - 대학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및 대학 자율 지표 반영
  - 평가지표의 목표치 설정과 평가과정에서 도달 여부 점검
- 지역사회 특성과 대학의 유형,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의 개선과 마련이 필요함.
  -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평가에 관한 현행 평가지표는 전임교원확보율, 재학생총원률, 장학금지급률, 법인지표 등 교육여건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표들임.
- 현행 재정지원 대학평가는 절대기준 값이 없는 지나친 상대평가로 인해 대학 간 과도한 출혈경쟁과 편법 활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전임교원확보율의 경우, 그를 높이기 위한 변형된 전임교원 채용이 난무하고, 그에 따라 경쟁적으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률 등은 대학이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임시적으로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지표들로서, 연구와 지역사회기여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지표임.



- 따라서 장기적인 대학발전과 건전화를 위한 방향에서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무차별적인 상대평가 지양: 대학 규모, 설립유형, 특성 등에 따른 평가지표의 차별화
  - 평가기준의 절대값을 제시하여 과도한 출혈경쟁 방지(예: 전임교원확보율 65% 이상 등 기준값 제시)
  - 연구실적이나 대외브랜드(인지도) 등을 반영. 이는 단기간 내 개선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대학의 투자와 노력이 반영되는 지표들임
  - 법인지표 등 사립대학의 노력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지표 제외

#### □ 평가운영 방식의 개선

- 대학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개발 등에 대해 협력
  - 구조개혁평가의 수행 및 추진에 대해 협의

#### 4) 영세 및 부실 사학의 출구 방안 제시

##### □ 강제적 퇴출보다 자연적인 퇴출 유도

- 우선적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도 학생의 대학 선택으로 대학의 자연적인 퇴출을 유도함.
- 현행 학자금제한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 정책 추진으로 자연적인 대학 퇴출이 가능함.

##### □ 자율적 퇴진 유도 및 지원

- 육성과 퇴출 지원 정책의 병행 추진을 통해 자율적 퇴출을 유도함.
- 잔여재산 최소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퇴진을 지원함.
- 퇴출자금의 지원과 구고개혁기금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사립대학의 명예로운 퇴진 출구를 제시함.

##### □ 퇴출을 악용할 소지 차단 기제 마련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전환 등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합의 및 감시 기제 마련
- 수익용 기본 재산 전환과 잔여 재산의 일부 귀속 등에 대한 회계 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 사회적 합의와 관리·감독을 위한 사전 심의위원회 운영 등 추진

## 5) 구조개혁 및 퇴출 대학에 대한 지원책 마련

### □ 퇴출대학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대책

- 퇴출대학 및 통폐합대학의 교직원 고용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함.
- 교직원은 해산 및 통·폐합 시 해당 학과를 기준으로 폐직이 되거나 과원이 된 경우 면직이 가능하고, 신규 채용 시 면직된 직원에 대한 우선 채용,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함.
- 해산 등의 경우 재학생은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을 지원하고 편입한 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 대학구조개혁 기금 조성 및 지원

- 구조개혁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학생 수 감축과 통폐합대학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운영경비 등을 지원함.
- 대학구조개혁 관련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기금을 조성하여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
-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 혹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삽입함.

## 6) 대학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 □ 법률안 명칭 개선

-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대학구조개혁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환 제정하여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함.
- [대학구조개혁 지원에 관한 법률](대체법률)은 김선동 법안이나 민병주 법안 등과 같은 대학통폐합과 퇴출대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구조개혁법률안의 내용 보완

- 기존의 자율적인 평가체제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 추진함(대학평가와 구조개혁을 분리)
  - 대학평가에 관한 사항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과, 관련 법령 [고등교육기

- 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이용하여 자율적이고 전문적 평가를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주요국에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보다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와 협의체에서 평가인증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개선을 유인하고 있음.
  - 주요국에서는 국가주도 평가인증이 아닌 자율성을 가진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해당 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밀접히 연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대학구조개혁은 기존 법령 안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퇴출대학 출구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체법률을 마련함.
- 구조개혁법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여 대체법률안을 마련함
- 대학평가 관련 용어 및 내용 삭제
  - 제2장 대학평가와 대학평가위원회 전면 삭제
  -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하여 대학평가는 현재의 대학인증평가를 활용하도록 함
  - 구조개혁의 비전과 목표 제시
  - 대학특성화, 대학 자율성,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둔 구조개혁
  -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추가

## [부록]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21
----------	-------

발의연월일 : 2014. 4. 30.  
 발 의 자 : 김희정·강은희·박인숙  
 염동열·박윤옥·박성호  
 주호영·박창식·김장실  
 조해진·신학용·하태경  
 서용교·이한성·이만우  
 김중태·이완영·정의화  
 이자스민·이에리사 의원  
 (20인)

### 제안이유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현재의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2023학년도에는 약 16만 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학생 수 감소에 대해 방치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게 되어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대학의 양적 규모는 축소하되,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학의 장은 대학의 발전계획·교육여건·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을 평가할 수 있고, 대학 평가의 결과를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대학의 장은 대학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안 제8조).
- 라. 대학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마.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 바.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대학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사. 교육부장관은 대학 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생정원 감축·조정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아.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 구조개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 자.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차.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미적용하도록 함(안 제25조).
- 카. 학교법인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이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타. 학교법인은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면직된 교직원을 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29조).
- 파. 국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대학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따른 재적생의 보호를 위하여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

법률 제 호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평가와 구조 개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3. “대학 평가”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가. 발전계획
  - 나. 교육여건
  - 다. 교육과정 및 운영
  - 라. 대학 및 학교법인의 운영
  - 마. 대학의 특성화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대학 구조개혁”이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생정원 감축·조정, 학사 또는 행정조직 조정, 대학 폐쇄·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및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통한 대학의 구조개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대학 평가 및 대학평가위원회

#### 제1절 대학 평가

제4조(자체 평가) ① 대학의 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학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 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대학 평가 및 이에 수반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를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대학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학 평가의 기본원칙) ① 대학 평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대학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 대학 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대학 및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대학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학 평가결과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대학평가위원회

제10조(대학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대학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법조계·산업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법원조직법」 제4조·제5조에 따른 대법관·판사는 제외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학교법인이나 대학인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대학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학교법인 또는 대학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3장 대학 구조개혁 등

#### 제1절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 결과의 활용

제15조(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이하 “자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생정원 감축·조정
2. 학사 또는 행정조직 조정
3. 대학 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4.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5. 학교법인의 해산
6. 대학 경영의 효율화

②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자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대학 구조개혁 명령 및 제재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정원 감축·조정
2.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
3. 그 밖에 대학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 평가의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교직원 또는 임직원이 제5조에 따른 대학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명령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1. 학생정원 감축 및 신입생 모집정지
2.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명령 또는 조치
3. 제17조제2항의 대학 폐쇄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학을 폐쇄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절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제18조(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설치) ①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조개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구조개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자체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명령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③ 구조개혁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및 학교법인 등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구조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조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2.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법조계·경제계·산업계 및 언론계 등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구조개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구조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그 밖에 구조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결격사유)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제2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제4장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특례

### 제1절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특례 등

- 제23조(해산 및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특례) ①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자체해산계획서 및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10조제4항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출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출연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또는 출연
  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및 장례비의 지급. 이 경우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지급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로의 귀속
- ④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1

항에 따른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된 해산인가신청서(자체해산계획서 및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교법인의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잔여재산처분의 한도)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잔여재산의 범위는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1.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2.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해당학기인건비 부담액
3.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또는 보상액
4.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면직하는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이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의 지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폐지되는 대학에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재산

② 교육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환원 금액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관한 특례)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학생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특례) ① 학교법인이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토지에 대해 학교법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같은 법 제27조·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학 폐지에 따른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특례) 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지한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보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법인에서 승계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에 용도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8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구조개혁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등 자체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이나 대학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권고,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절 교직원과 재학생의 신분

제29조(교직원의 면직 등) ① 대학의 교직원이 이 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및 다른 학교법 인과의 합병, 대학 폐쇄·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는 경우 교직원의 면직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학교법인은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면직된 교직원을 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일이 속하는 연 도에 정년에 이른 사람은 제외한다.

③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적절한 보상 을 내용으로 하는 명예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재적생의 보호) ① 국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대학 폐쇄·폐지, 대학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따른 재적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을 받은 대학의 장은 편입학하는 학생이 해당 대학에 재적하는 동안 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대학이 폐쇄 또는 폐지된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졸업증명서·성적증명 서·재직증명서 등 기록의 보관 및 관리와 그 증명의 발급 등을 다른 대학의 장이나 「한국사 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31조(지도·감독)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학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의 위탁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 개선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학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33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제

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9조에 따른 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①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제16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인가나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인가나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를 받은 경우

② 제32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구조개선”을 “구조개혁”으로 한다.

제4조(종전 정원감축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한 학생정원을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관련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인정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주제발표 II

#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

- 발표 : 대학발전총장위원회  
남궁근 총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목 차

---

I. 대학재정의 변화 추이 .....	50
1. 대학의 세입 변화추이 .....	50
2. 대학등록금 변화 추이 .....	55
II.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이후 대학재정의 변화 .....	57
1. 반값등록금 정책의 추진경과 .....	57
2. 반값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정책의 현황과 쟁점 .....	58
3.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학재정 운영에 미친 영향 .....	62
III. 국·공립대 기성회비 현황과 쟁점 .....	67
1. 국·공립대 기성회비 현황 .....	67
2.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쟁점 .....	67
IV.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 .....	68
1. 대학등록금정책 발전방안 .....	68
2. 장학금정책 발전방안 .....	69
3. 국·공립대 기성회제도 발전방안 .....	70

---

# I. 대학재정의 변화 추이

## 1. 대학의 세입 변화추이

### 가. 국·공립대

- 연도별 국·공립대학 세입 규모를 보면, 2010년을 정점으로 세입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이는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기성회회계의 세입 감소로 인함.

〈표 1〉 연도별 국·공립대학 세입 규모

(단위: 억원)

연도	학교 수	세입 총액	일반회계(국고)(%)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2001	46	29,882	18,979 (63.5)	10,903 (36.5)	- -
2002	46	31,061	16,693 (53.7)	14,369 (46.3)	- -
2003	46	36,702	20,415 (55.6)	16,288 (44.4)	- -
2004	46	39,948	20,789 (52.0)	17,073 (42.7)	2,086 (5.2)
2005	46	45,174	20,234 (44.8)	17,838 (39.5)	7,102 (15.7)
2006	43	53,477	20,371 (38.1)	19,465 (36.4)	13,641 (25.5)
2007	43	58,511	21,551 (36.8)	21,137 (36.1)	15,823 (27.0)
2008	41	68,287	22,407 (32.8)	22,780 (33.4)	23,100 (33.8)
2009	43	74,903	21,955 (29.3)	25,669 (34.3)	27,279 (36.4)
2010	43	75,424	21,336 (28.3)	25,840 (34.3)	28,247 (37.5)
2011	45	74,073	21,492 (29.0)	22,508 (30.4)	30,073 (40.6)
2012	45	63,075	18,937 (30.0)	19,400 (30.8)	24,738 (39.2)
2013	45	66,613	20,485 (30.8)	18,518 (27.8)	27,610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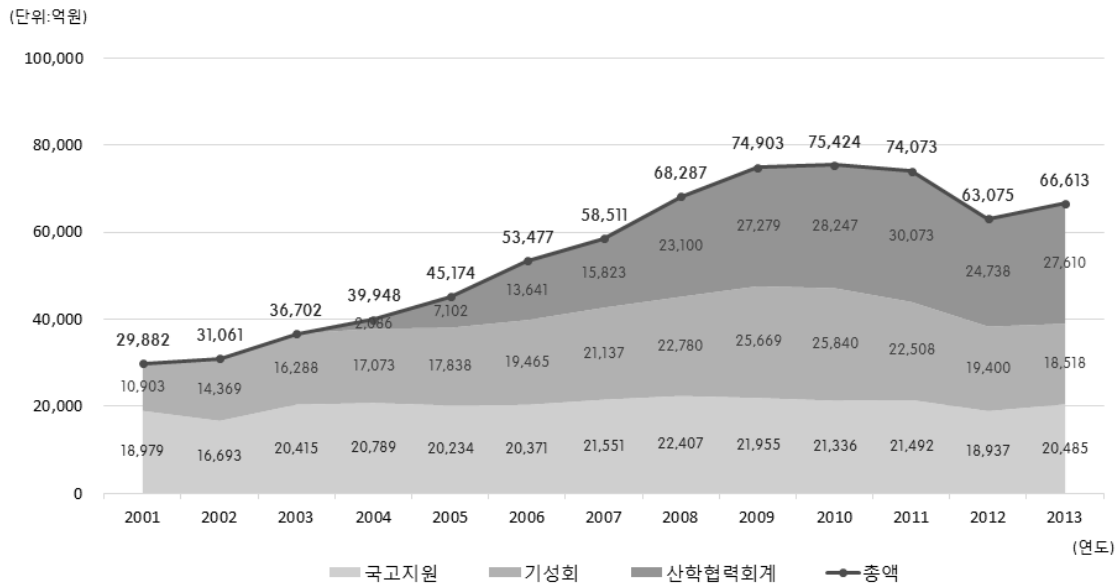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금액임<sup>1)</sup>

2. 2012년도와 2013년도는 예산자료임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1년~2013년 고등교육재정 관련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자료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 : 시계열지표에서 가격변동분을 제거한 기준년 가격으로 환산하여 비교할 때 사용하는 가격지수(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D.P.	76.075	78.177	80.924	83.83	86.139	88.07	90.302	94.523	97.129	100	104	106.28	107.67	109.24



[그림 1] 국·공립대학 세입 규모 누적 그래프

○ 연도별 국·공립대 기성회회계 세입항목별 변화추이를 보면, 기성회비 수입과 이월금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의 경우 보조금 수입이 최소한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세입총액이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남.

<표 2> 국·공립대 기성회 회계 세입항목별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기준년도	회비	이월금	보조금	잡수입	수입대체경비	합계
2009	1,213,527	231,978	224,087	43,887	125,023	1,838,503
2010	1,210,057	239,755	224,772	47,902	131,050	1,853,535
2011	1,170,271	211,048	217,869	55,226	111,197	1,765,613
2012	1,094,536	193,348	177,144	61,123	213,319	1,739,469
2013	1,074,283	129,713	30,195	50,548	204,808	1,489,547
2014	1,048,737	117,998	28,753	51,207	212,384	1,459,079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금액임  
 2. 2009~2012년은 결산자료, 2013~2014년은 예산자료임.  
 3. 연도별 세입변화 추이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산업대학, 산업대학에서 전환된 일반대학, 각종학교(대학) 등을 제외하고 35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통계치가 <표 1>과 다름.  
 출처 : 대학알리미

나. 사립대학

- 사립대학의 경우, 2001년 147개교에서 2011년까지 학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입규모도 2011년까지 증가해 왔음. 2011년을 정점으로 세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교비회계의 주 세입원인 등록금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보임.
- [그림 2]는 사립대학의 단위대학별 세입규모를 연도별 불변가로 나타낸 것이며, 단위대학별로는 교비회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 연도별 사립대학 세입 규모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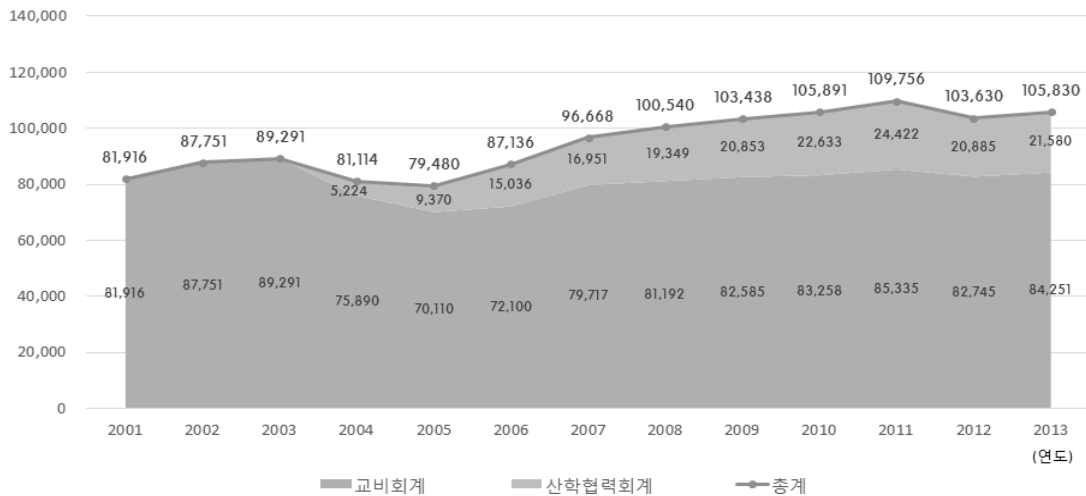
연도	학교 수	세입 총액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총액 (%)	총액 (%)
2001	147	120,416	120,416 (100.0)	--
2002	148	129,871	129,871 (100.0)	--
2003	156	139,293	139,293 (100.0)	--
2004	183	148,439	138,879 (93.6)	9,560 (6.4)
2005	191	151,808	133,911 (88.2)	17,897 (11.8)
2006	194	169,043	139,873 (82.7)	29,170 (17.3)
2007	194	187,537	154,652 (82.5)	32,885 (17.5)
2008	193	194,043	156,700 (80.8)	37,343 (19.2)
2009	195	201,704	161,041 (79.8)	40,663 (20.2)
2010	198	209,663	164,851 (78.6)	44,812 (21.4)
2011	199	218,415	169,816 (77.7)	48,599 (22.3)
2012	200	207,261	165,490 (79.8)	41,770 (20.2)
2013	199	210,603	167,659 (79.6)	42,944 (20.4)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금액임

2. 2012년도와 2013년도는 예산자료임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1년~2013년 고등교육재정 관련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자료

(단위: 백만원)



[그림 2] 사립대학 단위대학별 세입 규모 누적 그래프

- 연도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규모를 보면, 등록금 수입은 2010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그림 3]은 사립대학 단위대학별 교비회계 세입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로, 연도별 단위 학교 교비회계 중 등록금수입 비율은 2008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4〉 연도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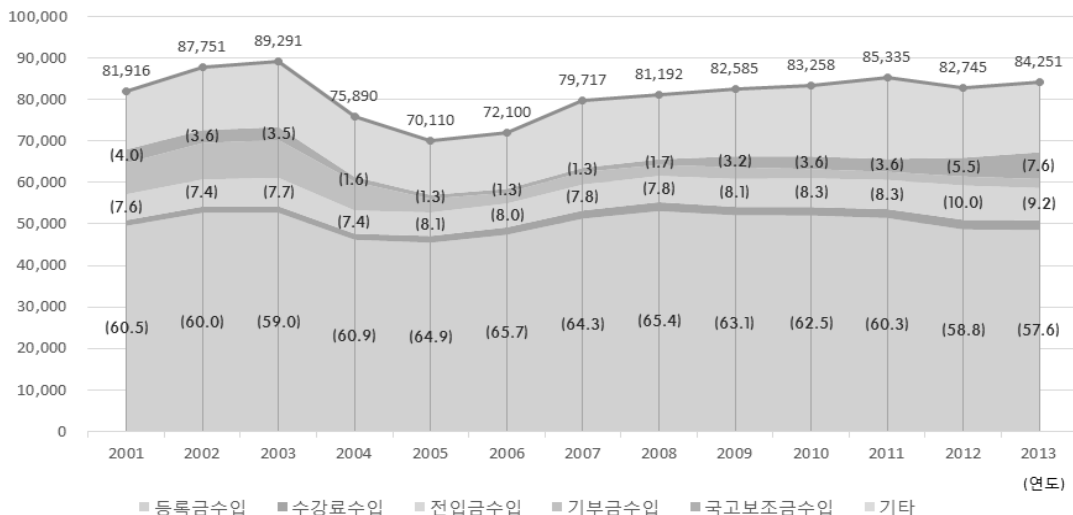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교비회계 총액	등록금 수입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			기타(%)
		등록금(%)	수강료(%)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	
2001	120,416	72,859 (60.5)	1,998 (1.7)	9,162 (7.6)	11,073 (9.2)	4,816 (4.0)	20,508 (17.0)
2002	129,871	77,963 (60.0)	2,262 (1.7)	9,651 (7.4)	12,978 (10.0)	4,627 (3.6)	22,391 (17.2)
2003	139,293	82,188 (59.0)	2,483 (1.8)	10,683 (7.7)	14,228 (10.2)	4,855 (3.5)	24,857 (17.8)
2004	138,879	84,537 (60.9)	2,666 (1.9)	10,232 (7.4)	12,612 (9.1)	2,221 (1.6)	26,609 (19.2)
2005	133,911	86,887 (64.9)	3,101 (2.3)	10,816 (8.1)	6,294 (4.7)	1,799 (1.3)	25,014 (18.7)
2006	139,873	91,949 (65.7)	3,483 (2.5)	11,144 (8.0)	5,052 (3.6)	1,828 (1.3)	26,418 (18.9)
2007	154,652	99,470 (64.3)	3,857 (2.5)	12,105 (7.8)	5,889 (3.8)	1,972 (1.3)	31,359 (20.3)
2008	156,700	102,487 (65.4)	4,194 (2.7)	12,161 (7.8)	5,134 (3.3)	2,615 (1.7)	30,108 (19.2)
2009	161,041	101,561 (63.1)	4,003 (2.5)	13,115 (8.1)	5,463 (3.4)	5,173 (3.2)	31,726 (19.7)
2010	164,851	103,020 (62.5)	4,070 (2.5)	13,663 (8.3)	4,470 (2.7)	5,983 (3.6)	33,646 (20.4)
2011	169,816	102,351 (60.3)	4,265 (2.5)	14,025 (8.3)	3,886 (2.3)	6,158 (3.6)	39,133 (23.0)
2012	165,490	97,347 (58.8)	4,694 (2.8)	16,491 (10.0)	4,327 (2.6)	9,073 (5.5)	33,558 (20.3)
2013	167,659	96,594 (57.6)	4,713 (2.8)	15,423 (9.2)	4,359 (2.6)	12,817 (7.6)	33,751 (20.1)

-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금액임  
 2. 2012년도와 2013년도는 예산자료임  
 3. 세입항목 중 '기타'에는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 교육부대수입(입시수수료, 사용료, 실습수입 등), 교육외수입(이자수입, 잡수입 등), 자산및부채수입(자산수입, 자산매각수입, 임대보증금수입, 기금인출수입 등), 전기이월자금 등이 포함됨.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1년~2013년 고등교육재정 관련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자료

(단위: 백만원)



[그림 3] 사립대학 단위대학별 교비회계 세입 항목별 비율 누적그래프

- 사립대학 교비회계 세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65.7%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2013년에는 57.6%까지 떨어짐. 반면 국고보조금 비율은 늘어나고 있음.

〈표 5〉 사립대학 세입결산 총액에서 평균 등록금 비율

(단위: 억원)

연도	세입 총액 (A)	교비회계 총액 (B)	등록금수입 (C)	등록금 비율	
				C/A	C/B
2001	120,416	120,416	72,859	(60.5)	(60.5)
2002	129,871	129,871	77,963	(60.0)	(60.0)
2003	139,293	139,293	82,188	(59.0)	(59.0)
2004	148,439	138,879	84,537	(57.0)	(60.9)
2005	151,808	133,911	86,887	(57.2)	(64.9)
2006	169,043	139,873	91,949	(54.4)	(65.7)
2007	187,537	154,652	99,470	(53.0)	(64.3)
2008	194,043	156,700	102,487	(52.8)	(65.4)
2009	201,704	161,041	101,561	(50.4)	(63.1)
2010	209,663	164,851	103,020	(49.1)	(62.5)
2011	218,415	169,816	102,351	(46.9)	(60.3)
2012	207,261	165,490	97,347	(47.0)	(58.8)
2013	210,603	167,659	96,594	(45.9)	(57.6)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금액임

2. 세입 총액 = 교비회계 세입결산액 + 산학협력단회계 세입결산액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1년~2013년 고등교육재정 관련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자료

〈표 6〉 사립대학 세입결산 총액에서 평균 국고보조금 비율

(단위: 억원)

연도	세입 총액	국고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비율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계	
2001	120,416	4,816	-	4,816	(4.0)
2002	129,871	4,627	-	4,627	(3.6)
2003	139,293	4,855	-	4,855	(3.5)
2004	148,439	2,221	1,919	4,140	(2.8)
2005	151,808	1,799	6,545	8,344	(5.5)
2006	169,043	1,828	11,693	13,520	(8.0)
2007	187,537	1,972	12,586	14,557	(7.8)
2008	194,043	2,615	14,096	16,711	(8.6)
2009	201,704	5,173	17,461	22,634	(11.2)
2010	209,663	5,983	21,230	27,213	(13.0)
2011	218,415	6,158	22,377	28,534	(13.1)
2012	207,261	9,073	22,635	31,708	(15.3)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금액임

2. 세입 총액 = 교비회계 세입결산액 + 산학협력단회계 세입결산액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1년~2013년 고등교육재정 관련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자료

## 2. 대학등록금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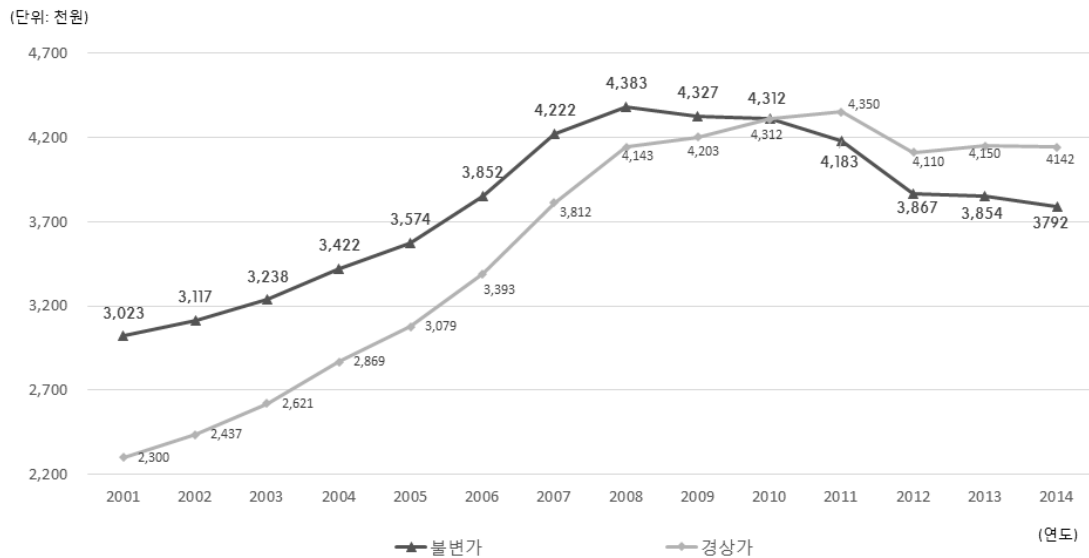
- 연도별 국·공립대 학생1인당 등록금 변화 추이를 보면, 경상가로는 2011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8년 등록금과 2014년 등록금이 거의 동일함.
- 불변가 기준으로 보면 2009년부터 등록금이 계속 감소하여 2014년 등록금은 2008년의 86.5%에 불과함(6년간 13.5% 감소).

〈표 7〉 연도별 국·공립대 학생1인당 등록금 변화 추이

(단위: 천원)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경상가	등록금	2,300	2,437	2,621	2,869	3,079	3,393	3,812	4,143	4,203	4,312	4,350	4,110	4,150	4,142
	인상률	4.9	6.0	7.5	9.5	7.3	10.2	12.4	8.7	1.4	2.6	0.9	-5.5	1.0	-0.2
불변가	등록금	3,023	3,117	3,238	3,422	3,574	3,852	4,222	4,383	4,327	4,312	4,183	3,867	3,854	3,792
	인상률	0.8	3.1	3.9	5.7	4.5	7.8	9.6	3.8	-1.3	-0.4	-3.0	-7.6	-0.3	-1.6

주.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 1. 2011년도까지 학생 1인당 등록금은 '한국교육개발원(2012), 대학등록금과 대학재정'에서 발췌하여 불변가로 환산함  
 2. 2012~2014년도까지 학생 1인당 등록금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 불변가로 환산함



[그림 4] 국·공립대 연도별 학생 1인당 등록금 변화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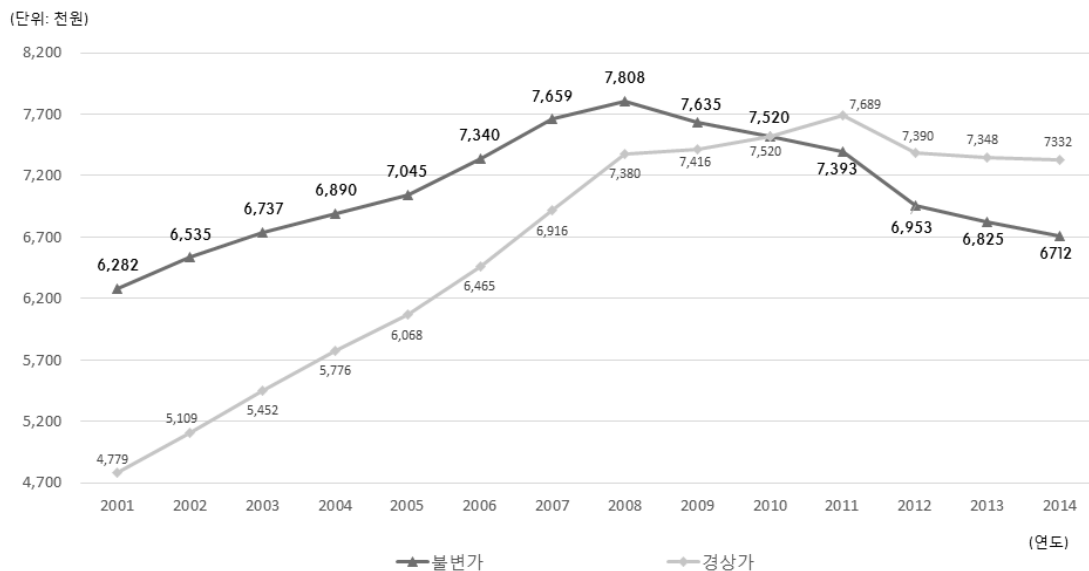
-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상가로 보면,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4년 등록금은 2008년보다 4.8만원 감소한 733.2만원임.
- 불변가 기준으로 보면 감소폭은 더 커져 2014년 등록금은 2008년에 비해 14.0%, 약 90만원 감소함.

〈표 8〉 연도별 사립대학 등록금 변화 추이

(단위: 천원)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경상가	등록금	4,779	5,109	5,452	5,776	6,068	6,465	6,916	7,380	7,416	7,520	7,689	7,390	7,348	7,332
	인상률	5.9	6.9	6.7	5.9	5.1	6.5	7.0	6.7	0.5	1.4	2.2	-3.9	-0.6	-0.2
불변가	등록금	6,282	6,535	6,737	6,890	7,045	7,340	7,659	7,808	7,635	7,520	7,393	6,953	6,825	6,712
	인상률	1.8	4.0	3.1	2.3	2.2	4.2	4.3	1.9	-2.2	-1.5	-1.7	-6.0	-2	-1.7

주.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 1. 2011년도까지 학생 1인당 등록금은 '한국교육개발원(2012), 대학등록금과 대학재정'에서 발췌하여 불변가로 환산함  
 2. 2012~2014년도까지 학생 1인당 등록금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 불변가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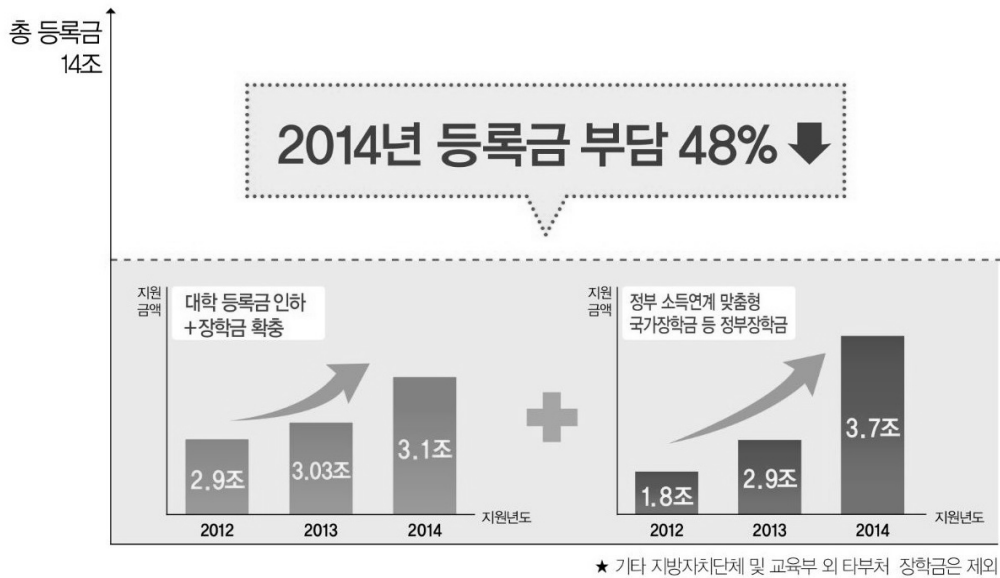
[그림 5] 사립대학 연도별 학생 1인당 등록금 변화 추이 비교



## II.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이후 대학재정의 변화

### 1. 반값등록금 정책의 추진경과

- 반값등록금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당 차원의 논의였으며, 반값등록금 논의가 정책의제로 전환된 것은 2011년 6월 23일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6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였음.
- 반값등록금이 정치문제화 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11월 25일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2012년 국가장학금으로 1조 7,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이어 2012년 11월 7일에는 2조 2,5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과 6,000~7,000억원의 대학 자체노력을 포함한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5,250억원이 추가 증액되어 2013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총 2조 7,750억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13년 1월 14일에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 2014년 1월 10일에는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를 강화하는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2014년도에도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의 부담 구조 하에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정부재원장학금(3.7조원)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분담분(약 3.1조원)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48%까지 경감이 가능하며,
  - 20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까지 경감시키겠다는 것임.
- 교육부는 2014년 현재,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I, II(3.34조원),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1,225억원), 근로장학금(0.2조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0.03조원) 등 정부재원장학금 3.7조원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 교내외장학금 등 대학 분담분 3.1조원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은 45% 경감되었고,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는 48% 수준으로 발표함.



[그림 6] 정부장학금과 대학노력에 의한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자료 : 교육부 대학장학과 보도자료(2014.4.14.)

-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강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함.
  -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하였음.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하율을 반영함으로써 등록금 인상 자체를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함.
  - 2011년 7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등록금에서 적립금 조성 시 적립 가능한 범위를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하였음.
  - 2012년 1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으로 교비회계에서 법정부담금 부담을 제한하여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학교의 재정계획 등을 바탕으로 교과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2. 반값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정책의 현황과 쟁점

- 반값등록금 논쟁이 가열됨에 따라 교육부는 2011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2012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일원화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제도를 시행함
  - ‘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전반 수준까지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힘

〈표 9〉 2013년 및 2014년 국가장학금의 개요

구분		2013년		2014년		
예산		2,775조원		3,4575조원		
		I 유형:2,075조원	II 유형:0.7조원	(I 유형) 2,835조원	(II 유형) 0.5조원	(다자녀) 0.1225조원
I 유형	대상	■ 기초 ~ 소득 8분위		■ 기초 ~ 소득 8분위 ■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		
	금액 (만원)	■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270, 3분위 180, 4분위 135, 5분위 112.5, 6분위 90, 7-8분위 67.5		■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450, 3분위 337.5, 4분위 247.5, 5분위 157.5, 6분위 112.5, 7-8분위 67.5		
	성적 기준	■ 80점		■ 80점, 기초~1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 고제” 도입(1회 70점 인정), * '14-2학기부터 시행		
II 유형	자체 노력 유도	■ (대응지원) '12년 자체노력의 30%, 추가 자체노력 100% 인정 ■ (평균등록금)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을 “인상”으로 인정(→II유형 참여 불가)		■ (대응지원) '13년 인정규모 60%(지속분), 추가 자체노력은 130% 인정 ■ (평균등록금)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 금 자연 증가분 “동결”로 인정 (→II유형 참여 가능)		
	지방인재 장학금 (신설)	-		■ (규모) 1,000억원 ■ (대상) II유형 참여 지방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다 자 녀 ( 신 설)	대상	-		■ 기초 ~ 소득 8분위, 만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		
	금액	-		■ 450만원		
	성적 기준	-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		

출처: 교육부 대학장학과 보도자료(14. 1. 9)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은 I, 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되었으며, '14년에는 중하위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시작함
  - I 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공립대 연평균등록금(45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일정비율을 지원
  - II 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해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과 연계하여 지원
    - ※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은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에 의해 결정되며, 장학금의 범위는 교내 장학금(학비감면, 내부장학금, 근로장학금)과 교외장학금(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장학금은 제외)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II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

-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충하여 왔음
  - ※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 : ('12년) 1.75조원 → ('13년) 2,755조원 → ('14년) 3,457.5조원

〈표 10〉 연도별 국가장학금 규모의 변화

(단위 : 억원)

단위사업·세부사업	내역사업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209	5,218	19,241	30,160	37,456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대통령 과학 장학생	100	85	65	62	62	
	드림장학금*	-	-	4	7	7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11	1	-	-	-	
	국가 장학생	이공계	745	745	666	665	633
		인문사회계*	143	168	130	130	130
	전문대 우수장학생*	-	96	66	15	6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국가근로장학금*	750	810	810	1,431	1,943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1,580	2,025	-	-	-	
	차상위계층 장학금	880	288	-	-	-	
	저소득성적 우수장학금	-	1,000	-	-	-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I 유형*	-	-	7,500	20,750	28,350	
	국가장학금 II 유형*	-	-	10,000	7,000	5,000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	-	-	1,225	
희망사다리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	-	-	100	100	

주. 1. 2010~2012년은 결산 기준, 2013~2014년은 예산 기준  
 2.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및 우수국가장학생사업(이공계)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  
 3. \* 표시된 사업은 2014년 교육부 소관 사업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2014.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표준화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대학과 학생 모두 국가장학금 수혜에 따른 교육비 부담완화를 체감하는데 한계
  -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의 재정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장학금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세밀한 상황파악과 검증이 진행되어야 함
  - 대학 내 학생에 대한 배분기준도 일정치 않아 같은 소득분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II유형)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학생 입장에서는 소득이나 성적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등록금 부족을 경험하는 상황에 처해있음

- 국가장학금 수령액 기준이 국공립대학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지 못함
  - 국가장학금은 계열별, 설립별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수혜효과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소득수준에 맞추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선정기준이 너무 높아 오히려 이 제도의 최대 수혜층이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야기
-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또는 교내외 장학금 확충 등의 자구적 노력을 전제하고 있어서 학교 간 자체노력 차이에 따른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배분기준의 지속가능성이 낮음

〈표 11〉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급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배정	인정 규모
2012	6,800	6,545
2013	5,671	3,349

주. '배정'은 교육부가 각 학교의 학생 수, 소득분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가배정액, '인정규모'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기준(자체노력 지수화)에 따른 지급 금액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3),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지출을 감소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자체 노력을 계속 요구할 경우 대학의 참여율이 낮아지고, 대학의 교육여건도 악화될 것임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투입 확대 없이 등록금 인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교육서비스의 질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단순히 학생의 경제적 수준만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학생소요총액, 등록금지불능력, 학생필요경비 등을 통한 정밀한 장학금 지급방안 마련이 필요

### 3.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학재정 운영에 미친 영향

- 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옴. 2011년 131만원 수준에서 2013년에는 211만원으로 61.5% 증가함.

〈표 12〉 설립별·권역별 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변화추이

(단위 : 천원)

설립별	권역별	2011	2012	2013
전체	전체	1,306.9	1,442.9	2,111.1
	수도권	1,448.8	1,572.0	2,210.2
	비수도권	1,221.8	1,365.8	2,054.6
국·공립	전체	1,123.0	1,204.7	1,820.1
	수도권	1,220.9	1,132.9	1,536.6
	비수도권	1,114.0	1,212.1	1,840.3
사립	전체	1,357.1	1,508.0	2,189.1
	수도권	1,460.4	1,596.9	2,237.4
	비수도권	1,271.2	1,435.1	2,150.8

주.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2.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교내장학금합+교외장학금합)/재학생수  
 자료: 대학알리미

- 그러나 장학금의 증가는 기계기구매입비,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 직접교육비의 지출을 축소하여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
  - '12년 교육여건 관련 지출예산 증감 현황(4년제 사립대 155개교 기준)을 보면, 등록금 수입이 1.6% 감소하는 상황에서 장학금은 26.0% 증가했으나, 직접교육비는 4% 줄었음.
  - 기계기구매입비,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의 감소폭은 9.1%에 이름.

〈표 13〉 '12년 교육여건 관련 지출예산 증감 현황(4년제 사립대 155개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a)	'12년(b)	증감(b-a)		
			금액	비율	
등록금 수입	10,444,831	10,277,615	△167,216	△1.6	
장학금	교외장학금	494,371	895,294	400,923	81.1
	교내장학금	1,825,245	2,028,335	203,090	11.1
	소계	2,319,616	2,923,629	604,013	26.0
교육 지출	학생지원비	297,262	339,063	41,801	14.1
	기타학생경비	186,197	204,405	18,207	9.8
	기계기구매입비	384,439	313,464	△70,975	△18.5
	연구비	679,975	621,126	△58,849	△8.7
	실험실습비	238,460	236,360	△2,100	△0.9
	도서구입비	154,958	149,484	△5,474	△3.5
	소계	1,941,290	1,863,901	△77,389	△4.0

주: 1. 학생지원비: 교내신문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보조 및 학생행사보조 등 비용  
 2. 연구비: 연구비와 연구관리비를 포함한 금액  
 자료: 유기홍의원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명박정부 등록금 정책 진단, 2012. 10)

- 설립별·권역별 대학의 자료구입비 변화추이를 보면, 2011년 대학총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은 1.0%였으나, 2013년에는 0.9%로 줄어들었음.
-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11년 121,700원에서 2013년에는 113,600원으로 6.7% 줄었음.
- 2010년 불변가 기준으로 보면, 자료구입비 감소율은 9.8%로 늘어남.

〈표 14〉 설립별·권역별 대학의 자료구입비 변화추이

설립별	권역별	대학총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천원)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13/'11(%)
국·공립	전체	1.2	1.1	1.1	112.0	108.5	106.6	95.2
	수도권	1.3	1.1	1.6	125.5	121.6	152.7	121.7
	비수도권	1.2	1.1	1.0	110.7	106.4	101.2	91.4
사립	전체	1.0	0.9	0.9	124.6	118.0	115.6	92.8
	수도권	1.2	1.0	1.0	157.0	147.7	145.8	92.9
	비수도권	0.8	0.8	0.7	88.5	85.9	83.0	93.8
전체	전체 ('10불변가)	1.0	1.0	0.9	121.7 (117.0)	115.8 (109.0)	113.6 (105.5)	93.3 (90.2)
	수도권	1.2	1.0	1.0	155.5	145.8	146.2	94.0
	비수도권	0.9	0.9	0.8	96.4	93.2	89.5	92.8

주: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2. 대학총예산대비 자료구입비=(자료구입비/대학총예산) × 100  
 3. 학생 1인당 자료 구입비=(자료구입비/재학생수)  
 자료: 대학알리미

- 대학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변화추이를 보면, 2011년보다 2012년 약간 줄었다가 2013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3년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13.1%나 줄어들었음.

〈표 15〉 설립별·권역별 대학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변화추이

(단위 : 천원)

설립별	권역별	2011	2012	2013	2013/2011(%)
국·공립	전체	4,280.3	4,042.4	4,670.7	109.1
	수도권	6,386.1	5,344.3	6,062.4	94.9
	비수도권	4,106.8	3,886.2	4,546.4	110.7
사립	전체	5,342.9	5,403.5	5,279.8	98.8
	수도권	7,038.5	7,393.1	7,420.9	105.4
	비수도권	3,764.0	3,557.4	3,271.6	86.9
전체	전체	5,087.8	5,080.5	5,141.1	101.0
	(‘10불변가)	(4,892.1)	(4787.4)	(4774.9)	(97.6)
	수도권	7,007.6	7,260.5	7,356.3	105.0
	(‘10불변가)	(6,738.1)	(6831.5)	(6832.3)	(101.4)
	비수도권	3,887.6	3,672.1	3,710.1	95.4
	(‘10불변가)	(3,738.1)	(3455.1)	(3445.8)	(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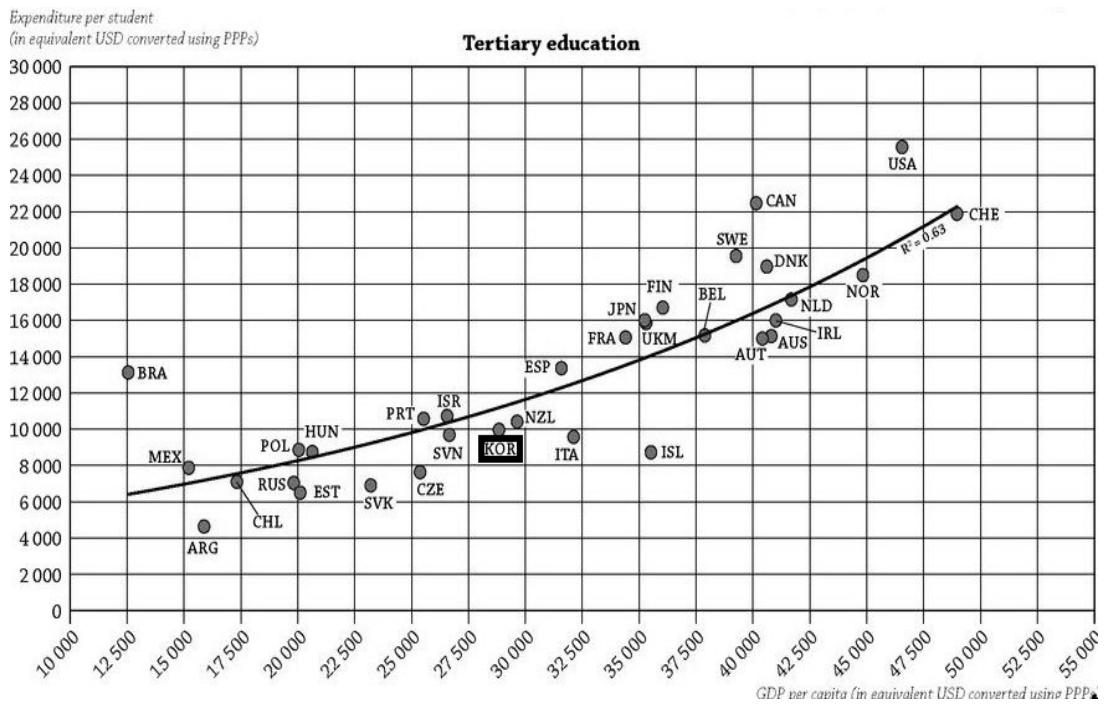
주.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2. 전임교원 교내 1인당 연구비 = (교내연구비+교내대응자금)/전임교원수

자료: 대학알리미

- 2010년 불변가를 기준으로 보면,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전체적으로 2.4%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대학의 감소폭은 7.8%로 확대됨.
- 반값등록금 정책의 시행으로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됨.
-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반값등록금 논의와 함께 등록금 인하·동결이 시작된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 (2011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9,900로 추정됨)
  - 반값등록금이 본격 시행된 2012년 이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대학생 1인당 교육비의 감소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그림 7] 국민 1인당 GDP수준과 대학생 1인당 교육비 국제비교

출처: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_1999148](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_1999148))

- 한국의 대학교육비를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경제수준에 비해 교육비 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에 속함.
  - 2010년 기준으로,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순위는 19위에 불과함.
  - 국민 1인당 GDP 수준을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과 비교할 때, 국민 1인당 GDP 수준에 비해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국가에 속함.

〈표 16〉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 국제비교

(단위 : PPP,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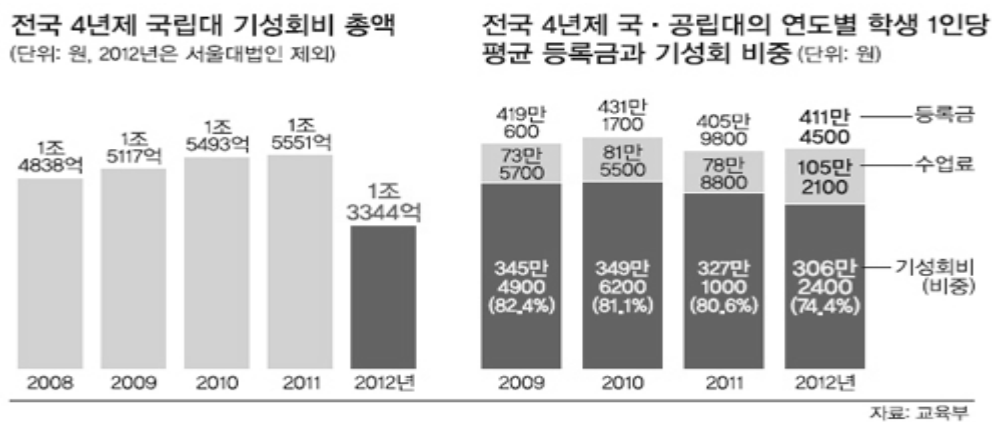
국가별	2008		2009		2010	
	교육비	순위	교육비	순위	교육비	순위
한국	9,081	22	9,513	22	9,972	19
호주	15,043	12	16,074	11	15,142	12
오스트리아	15,043	12	14,257	16	15,007	15
벨기에	15,020	14	15,443	14	15,179	11
캐나다	20,903	3	20,932	3	22,475	2
체코공화국	8,318	23	8,237	24	7,635	25
덴마크	17,634	6	18,556	6	18,977	5
핀란드	15,402	9	16,569	8	16,714	8
프랑스	14,079	16	14,642	15	15,067	13
독일	15,390	10	15,711	13	-	-
그리스	-	-	-	-	-	-
헝가리	7,327	25	8,518	23	8,745	22
아이슬란드	10,429	19	9,939	20	8,728	23
아일랜드	16,284	8	16,420	9	15,008	14
이태리	9,553	21	9,562	21	9,580	20
일본	14,890	15	15,957	12	16,015	9
룩셈부르크	-	-	-	-	-	-
멕시코	7,504	24	8,020	25	7,872	24
네덜란드	17,245	7	17,849	7	17,161	7
뉴질랜드	10,526	18	10,619	18	10,418	18
노르웨이	18,942	5	19,269	5	18,512	6
폴란드	7,063	26	7,776	26	8,866	21
포르투갈	10,373	20	10,481	19	10,578	17
슬로바키아	6,560	27	6,758	27	6,904	26
스페인	13,366	17	13,614	17	13,373	16
스웨덴	20,014	4	19,961	4	19,562	4
스위스	21,648	2	21,577	2	21,893	3
터키	-	-	-	-	-	-
영국	15,310	11	16,338	10	15,852	10
미국	29,910	1	29,201	1	25,576	1
OECD평균	13,717	-	13,728	-	13,528	-

출처: OECD(2011, 2012, 2013),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표 B1.1a([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_19991487](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_19991487))

### Ⅲ. 국 · 공립대 기성회비 현황과 쟁점

#### 1. 국 · 공립대 기성회비 현황

-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 제기 및 승소
  - 2012년 1월, 8개 국립대생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이후 관련 소송 다수 진행
    - ※ 8개 국립대생의 기성회비 반환청구 고법 항소심 : 학생 일부 승소('13.11)
- 기성회비 징수 근거에 대한 법적 논란
  - 법원은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함.
    - ※ 징수권한을 정한 학칙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이고, 보호자의 의무가입을 명시한 기성회 규약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판단임.
- 국립대학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4.4% (2012년)에 달하고 있으므로, 기성회비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8] 평균 등록금과 기성회 비중

#### 2. 국 · 공립대 기성회비의 쟁점

- 기성회비의 반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반환금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국가의 책임은 면책되고, 각 대학의 기성회와 개별 청구자 사이의 문제로 규정함.
  - 법원은 반환금의 지급책임이 대학이 아니라 기성회에 있다고 특정하고 있기는 하나, 반환 소송이 확대되면 사회문제화 될 것임.

- 최근 10년치의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준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기성회비가 충당한 교육재원을 향후에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 국가 재원의 부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기성회회계 폐지에 연계해서 전 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
  -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하여 대학 자체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 :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별도의 회계를 신설하고, 그 회계 집행의 자율권을 현재의 기성회비 처럼 대학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 국립대학에 대한 명목상의 반값등록금 요구와, 별도의 대학회계 신설 및 국립대학 법 인화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내부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IV.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

### 1. 대학등록금정책 발전방안

- 대학등록금정책 개선의 필요성
  -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되 대학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반값등록금 주장의 논리적 모순 표면화
  -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대학 부담분은 각각 4조원, 3조원이었으나, 2014년 대학은 3.1조원으로 대학 부담분을 초과 달성하였고, 2015년에 국가부담분 4조원 중 미부담분 0.3조원을 증액하면 반값등록금이 완성되므로 이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정원감축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주세입원인 등록금수입이 줄어들어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높은 취학률, 높은 대학 학령인구에 비하여 1인당 교육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OECD 평균수준 이상에 이르도록 정부의 고등교육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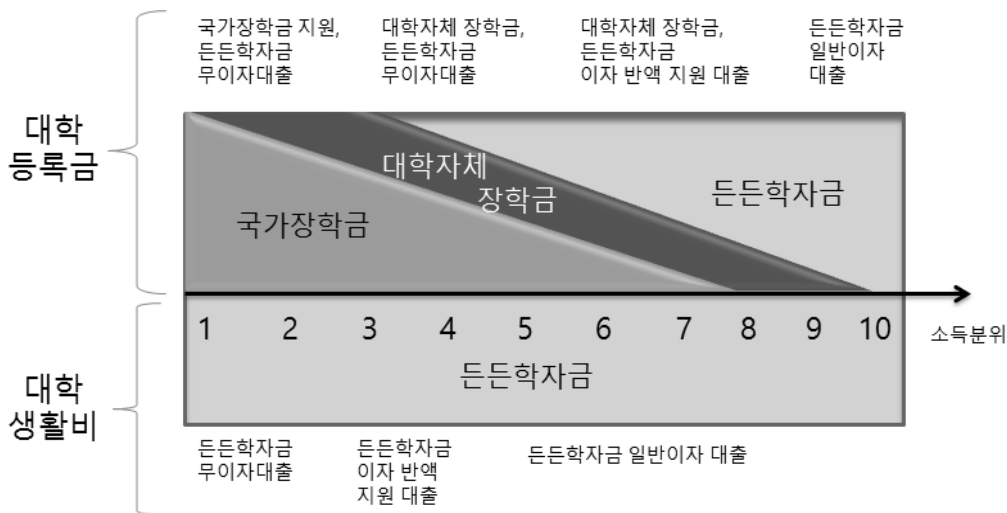
- 대학 입장에서 반값등록금은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등록금상한제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개별대학의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의 자율적 책정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지방대학육성 차원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함.
  -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상한제 규정은 유지하되, 교육부의 각종 평가지표와 행정지침에 의해 「고등교육법」의 등록금 상한제 규정마저 무력화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
    -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을 계속 규제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임.
    - 각종 평가지표나 재정지원지표에는 등록금 상한제 준수여부만을 반영하도록 하며, 등록금인상 여부를 행정지침이나 각종 평가지표에 정책유도지표로 강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등록금 의무면제제도는 1982년 졸업정원제의 산물이므로, 국가장학금제도가 정착되고, 지난 수년간 등록금 인하·동결이 이루어진 만큼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
    - 가계곤란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학비지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국가유공자는 사립대학 유공자가 아니므로 국가가 교육지원을 해야 할 것임.
- ※ 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지원 교육비 부담액 : 473억원('13년 예산기준)

## 2. 장학금정책 발전방안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분리된 현재의 틀을 하나로 통합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지원취지를 살릴 수 있음
  -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대한 대학 대응투자 요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적 수입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일종의 대학교육 비용으로 작용함으로써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우려가 크므로 I 유형에 통합함.
-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무상장학금을 무조건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대출 등으로 수혜의 폭과 내용을 확대하는 맞춤형 장학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국가장학금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여 하위 소득분위에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상위 소득분위에는 학자금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 소득분위에 따라 무상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등록금액이 학제별·계열별·설립별·지

역별로 다양하므로 등록금 실소요액을 지원하는 데 따른 논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제별·계열별·설립별·지역별로 기준등록금을 산정하여 지원함(기준등록금보다 실등록금이 적을 경우에는 실등록금이 기준등록금이 됨).

- 하위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기준등록금 범위내) 전액을 충당하되, 기준등록금을 초과하는 등록금은 대학자체 장학금이나 무이자 학자금대출로 충당함.
- 중위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 일부와 대학 자체장학금, 그리고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충당하되, 학자금대출 이자를 기본이자의 1/2 이하로 경감함.
- 상위 소득분위는 원하는 경우 기본이자를 부담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 대학에 다니는 동안 생활비가 필요할 경우, 든든학자금 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소득분위에 따라 대출 이자를 차등 적용함), 생활비 대출 상한액은 상향조정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9] 대학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정부 및 대학의 지원 개선방안

자료 : 김병주(2014). 소득연계맞춤형 장학금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 3. 국·공립대 기성회제도 발전방안

#### ○ 기성회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원칙

-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단순 통합한 1999년의 사립대학 사례를 참고하여 설립별 형평성을 고려함.
-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의 법적 근거 마련

과정 및 학교회계 신설 사례를 참고함(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 신설 조항을 신설하여 간접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성회비 반환 소송 대책과 기성회비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분리하여 추진함

○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책으로 제안된 법률안

- 여당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 :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고, 국립대학 교비회계를 설치하여 대학자율로 예산편성 및 집행
- 야당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 : 기성회비 수입액의 20%를 국가재정으로 투자하되, 연차적으로 국가부담을 20%씩 늘려 2020년에는 100%를 국가가 부담

○ 기성회비에 대한 대안

-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책임을 선언적 형태로 법조문에 규정하고,
- 여야가 두 법안을 병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3의 법안을 제정하여 기성회 회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재원 확보를 촉구함.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주제발표 Ⅲ

# 대학간 창조적 ▶ 협업 전략방안

- 인적 · 물적 자원 공유로 대학 생존력과 경쟁력 제고 -

□ 발표 : 대학발전총장위원회

홍 승 용 총장(덕성여자대학교)



---

## 목 차

---

I. 대학간 자원 공유 필요성 .....	76
1. 국내 대학의 현실 .....	76
2. 국제적 추세 .....	76
3. 대학간 협업을 통한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대명제 .....	77
II. 현황 및 사례 .....	77
1. 대교협의 대학간 공유 협력 사례 .....	77
2. 대학간 공유 협력 사례 .....	80
3. 해외 대학자원 공유 사례 .....	89
III. 대학의 생존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 .....	93

---

# I. 대학간 자원 공유 필요성

## 1. 국내 대학의 현실

-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 중인 국가개조 과제 중 ‘대학경쟁력 제고’는 중요과제로 포함되어야 함. 우리나라 대학들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고급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교육과 연구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대학등록금 인하 내지 동결,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생 장학금은 늘었지만 대학은 가난해진 모순의 재정상황이 되었고, 나아가 지금부터는 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교육시설 확충은 고사하고 교수 충원도 어려운 상황 전개
- 정부는 21세기 들어 누리사업 및 BK21 사업을 추진했고, 현 정부도 BK21플러스사업, 수도권특성화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대학에 재정지원하고 있으나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 필요성 제기. 이는 각 대학별·사업별 지표 중심으로 단위 대학 간 경쟁을 강조하고 있어 오히려 대학 간 공유 및 협력을 통한 국가 전체의 대학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음
- 이제는 협력을 넘어 협업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에 의한 ‘대학의 협업경제 (Collabonomics)’를 추진 할 때

## 2. 국제적 추세

-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할 목적에서 대학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가 국제적 추세임
  - ※ 2002년 UNESCO가 OER(Open Education Resources, 교육자원공개), MIT대학의 OCW(Open Course Ware) 운동을 전개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자원공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 A NIEI(멕시코), CONEAU(페루), ACE(미국), WASC(미국), NIAD-UE(일본), HEEC(중국), Universities UK(영국) 등 국가별 고등교육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기관과 상호 협력을 노력함
- EU의 **블로냐 프로세스**, **에라스무스 문두스**, 한·중·일 **Campus Asia** 등 국가 간 학점인정 및 공동·복수학위제도 도입 등 고등교육의 협력활동 노력 지속
- 특히 ‘오프라인 대학교육 경쟁’에서 국경 없는 시장인 ‘온라인 대학교육 공유 내지 점유’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의 경쟁 및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집중하고 있음

### 3. 대학간 협업을 통한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대명제

- ‘Student First Policy’ 구현. Seller’s Market에서 Buyer’s Market으로 변모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고객인 대학생의 학습만족도 극대화를 모색해야 함. 특히, 교양 과목과 융·복합 영역의 특수전공 영역은 최고교수 강의가 되어야 함
  - ※ 교육의 질 제고 →강의의 질→최고의 강의 내용과 강의 방법
- 대학 교육원가 절감과 교육·연구의 질 제고. 대학등록금 인하 및 동결, 학생 정원 감축 등 대학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대학 간 협업 NETWORK을 구성하고 기능 분화 및 자원 공유하여 대학 운영 원가를 절감하면서 교육·연구의 효율성 제고.
  - ※ 단위 학교의 제한된 자원에 국한한 대학교육을 초월한 교수 간 협업, 협력 강의, 강의 공유, 국제협력 공유, 연구장비 공동 활용학문분야별 협력, 교수협력, 협력강의, 연구교류, 연구 장비 및 대학시설 공동 활용 등 대학 간 자원을 공유
- 협력(Cooperation)에서 협업(Collaboration)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글로벌 경쟁 대응. 특히 대학별 우수한 강의를 대학 간 공유로 동반성장하고, 융·복합 분야 협력 강의 개설 등 대학 간 교육 협업의 경제학(Collabonomics)은 향후 On-line, Off-line에서 해외 대학 강좌와 경쟁해야 하는 변화에 대한 대응대안이 될 수 있음
  - ※ 국내외적 협력의 형태는 Bilateral→Multilateral→Regional→Global 차원으로 확대
  - ※ 교육중심 대학 간 협업, 연구중심 대학 간 협업, 교육중심-연구중심대학 간 협업, 수도권대 학-지방 대학 간 협업

## II. 현황 및 사례

### 1. 대교협의 대학간 공유 협력 사례

#### □ 기초교양교육 공동 강의 사례

- **(필요성 및 목적)** ① 대학 간 유사한 기초 교양교육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 재정위기는 대학 내 기초 교양교육이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 ② 교양과목에서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48%<sup>2)</sup>에 달하고 있음 ③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기초

2) 대교협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4, 4). 대학기초교양교과목 현황 조사.

학문 분야의 연구자 수 급감 ④ 계절학기 비용 절감 필요 ⑤ 대학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기초교양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양-기초 교육영역의 학문 간 소통과 교, 강사 간 교류협력

- **(사업내용)** ① 교과목 공동 개발: 여러 대학의 교, 강사가 숙의하여 교과목을 개발 ② 강의 내용 공동 연구 및 공유: 강의 내용을 숙의하여 동일한 실라버스를 구성하고 이를 공유 ③ 교수-학습법 공유: 교수학습 방법을 공유 ④ 공동 강의: 참여 교, 강사가 동일한 강의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각기 강의 ⑤ 공동 평가: 공동 출제를 통해 평가 동질화 시행 ⑥ 동영상 제작 및 공개: 전 강의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교기원 웹사이트에 탑재

- **(추진현황)** 2013년도 겨울 계절 학기부터 공동 강좌 개설

기초교육 강의 3.0	사업기간	2013년도 겨울 계절학기 강좌		
	대상영역	2013년 겨울 계절 학기에 개설되는 기초교육 영역의 교과목		
	참여사업단 (5개사업단)	강 의 명	소 속	
		기초작문과 프리젠테이션	강원대(책임), 배재대, 충남대	
		초급 중국어	울산대(책임), 창신대, 부산외대	
		읽기와 쓰기	송실대(책임), 서강대, 송실대	
		사고와 표현	신라대(책임), 동아대	
		미분적분학(2)	서울과기대(책임), 한성대	
융복합 강의 3.0	사업기간	2014년도 2학기 개설		
	대상영역	○ 교양교육 영역의 인문사회(예술·체육학 포함)와 이공계(자연과학·공학·의약학·농수해양)의 융복합 분야 교과목 개발 ○ 교양교육 영역의 인문학·사회과학·과학기술·예술체육 분야 중에서 분야 간 또는 같은 분야 내에서의 융복합 교과목 개발		
	참여사업단 (8개사업단)	강 의 명	소 속	
		SciArt 들여다보기	영남대(책임), 경북대, 계명대	
		관광도시탐험	동서대(책임), 신라대	
		증강현실로 보는 예술	계명대(책임), 대가대	
		CSI(Cinema-Socioscientific Issue)	가톨릭대(책임), 한세대	
		생명의료윤리	강원대(책임), 서울대	
		정보과학으로 보는 우리의 삶	선문대(책임), 목원대	
		폭력과 치유	경희대(책임), 강릉원주대학교, 건국대학교	
빅데이터와 세상 읽기	강원대(책임), 배재대, 세명대			

인성교육 3.0	사업기간	2014년도 2학기 이후 개설	
	대상영역	2014년 2학기에 개설되는 인성관련 교과목 혹은 인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사업단	강 의/프로그램 명	소 속
		CMLP:창의 인성 리더십 캠프	동국대(책임), 중앙대, 한국 Zen 연구소
		성균 인(仁)Dream	성균관대(책임)
		용서학	꽃동네대(책임)
		나눔의 공학	
		환자-의사-사회의 관계 내에서의 다면 인성교육	
		품격을 높이는 예비교사 인성 프로그램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신나는 바른 인성	
	균형 있는 성 인식 함양을 위한 RC 포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人)		

- **(기대효과)** ① 질 높은 기초교양교육 대학 간 공유 ② 학문 영역별로 단절되고 고립된 연구, 강의 분위기를 소통과 융합의 장으로 전환 ③ 공동의 융합연구를 초대로 한 협력적 융합강의에 대학 외 산업계의 인사도 참여할 수 있어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과의 연계가 활성화 ④ 한 대학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는 대학 내 학사조직 및 학사관리 프로세스를 대학 간 프로세스로 오픈함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교수-학습체제 개선 등을 추동 ⑤ 한 대학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양/기초 강좌 및 특정 학문 영역의 강좌를 공유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고정비를 저감시켜 대학 운영비용 구조 개선에 기여

□ **고교-대학 심화 과정(UP) 사례**

- **(목적)** 교육기회 확대, 실질적 교육 평등의 실현,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학습자의 학습능력 제고, 교육의 지속성 유지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한 고교와 대학 교육의 연계 강화 및 대학 간 학점 상호 인정
- **(사업내용)** 학교장, 교과담당 및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재학생(학년구분 없음)과 대학별 수시전형 합격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여름겨울방학) 4년제 일반대학(대학교수 또는 경력이 풍부한 대학강사 강의)에서 진행
- **(추진현황)** 2007년부터 대교협이 위탁받아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하며, 이수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협약대학 내 진학 시 해당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표준 교육과정	자연계열	수학	미적분학 I·II, 통계학
		화학	일반화학이론 I·II, 일반화학실험 I·II
		생물학	일반생물학이론 I·II, 일반생물학실험 I·II
		물리학	일반물리학이론 I·II, 일반물리학실험 I·II
		환경과학	환경과학
		과학사	과학사
		컴퓨터과학	컴퓨터과학
	인문사회 계열	국어	글쓰기, 문학
		영어	영작문
		사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영학(검정 중), 한국사(검정 중)
협약대학 56개교 (*2014년 신규협약대학 12개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강남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계명대학교, 단국대학교, *덕성여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경주),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교대,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신한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영남대학교, 영동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항공대,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호서대, KAIST		

- **(기대효과)** ① 국가 차원에서 우수인재 조기 발굴 및 육성 및 공교육 차원의 높은 수준 교육제공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②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 및 지역 우수인재 발굴 ③ 학생 개인적 차원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잠재능력 계발, 대학 수업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진학 결정에 도움, 대학수업을 미리 선이수함으로써 대학 진학 후 부·복수전공이 용이하고, 조기졸업 도움 ④ 교육적 차원에서 고교와 대학 교육의 연계를 통해 교육의 지속성 및 효과성 향상

## 2. 대학간 공유 협력 사례

### □ 서울대학교의 무크 시스템(edX) 운영 사례

- **(목표)** 서울대학교는 학내 교수-학습 발전을 위한 시도 및 연구, 대외적 지식 나눔, 그리고 대학의 글로벌 위상 확인 및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5월 21일 edX와의 협약을 통하여 SNUx로 가입하였으며, 2014년 6월 5일 현재 한 강좌의 운영을 마치고, 세 강좌 운영 준비 중에 있음



- \* Massive Open Online Courses(MOOCs)는 전 세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우수 대학 및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개강좌로, 동영상, 문서와 같은 학습자료 뿐만 아니라 연습문제, 과제, 시험, 토론과 같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MOOCs 공급기관으로 Coursera, edX, Udacity 등이 있음
- \* 우리나라의 KAIST대는 Udacity, 서울대학교는 edX에 각각 가입되어 있음
- \* 무크 운동은 미국대학의 과도한 학비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대학생들의 졸업률과 취업률까지 높일 수 있는 대학개혁의 핵심요소로 정책적 지원을 제도화할 것임
- \* edX는 MIT와 Harvard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 기업으로, 세계 40개 대학 및 기타 15개 대학/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전 세계 학습자에게 각 대학 및 기관의 127개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고,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공개 강의 서비스 기관임

○ **(추진현황)** ① edX 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첫 강좌(Robot Mechanics and Control, Part I) 개설·운영(2014. 03. 28) 후 현재까지 4개 강좌 개설 ② 2013년 1학기 실제 수업을 촬영한 ‘열린강좌’ 13강좌 중 3강좌를 선정하여 공개하며 모두 무료 이수증(Honor Code) 발급

강좌명	운영기간	교수	수강신청자
Robot Mechanics and Control, Part I	2014. 3. 28~5. 8 (6주)	박종우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13,758 (완료)
Robot Mechanics and Control, Part II	2014. 6. 9~8. 4 (8주)		4,027 (6/5 현재)
Introductory Physics — Part 1: Mechanics and Waves	2014년 7~8월 중 개강 예정	최선호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11,109 (6/5 현재)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Korean Peninsula, Part 1		조동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4,233 (6/5 현재)



HOW IT WORKS COURSES SCHOOLS & PARTNERS

dashboard



Back to schools and partn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s first national university and the indisputable leader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wants to share creative knowledge and experiences. SNU has produced fruitful achievements in various fields, ranging from business, politics, natural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The mission of SNU is to create a vibrant intellectual community where students and scholars join together in building the future.

**Courses:** Showing 1 - 4 of 4    all | current | new | past

**NEW** SNU446.345.2x: **Robot Mechanics and Control, Part II**

A mathematical introduction to the mechanics and control of robots.

STARTS: 9 Jun 2014    INSTRUCTORS: Frank C. Park    SN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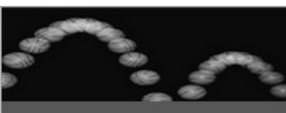


learn more

**NEW** SNU034.005.1x: **Introductory Physics — Part 1: Mechanics and Wa...**

Grasp physics from everyday experience. This course covers the basics of Newtonian mechanics, including oscillations and wave phenomena.

STARTS: Q3 2014    INSTRUCTORS: Seonho Choi    SNUx



learn more

**NEW** SNU216B.226.1x: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Korean Peninsula, ...**

An introduction to archetypes of politics and contemporary issue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STARTS: Q3 2014    INSTRUCTORS: Dong-joon Jo    SNUx



learn more

SNU446.345.1x: **Robot Mechanics and Control, Part I**

A mathematical introduction to the mechanics and control of robots.

STARTS: 28 Mar 2014    INSTRUCTORS: Frank C. Park    SNUx



learn more

**Simply Audit this Course**

Audit this course for free and have complete access to all of the course material, tests, and the online discussion forum. You decide what and how much you want to do.

Free to All More about Auditing a Course

**Simply Audit this Course**

Audit this course for free and have complete access to all of the course material, tests, and the online discussion forum. You decide what and how much you want to do.

Free to All More about Auditing a Course


**Simply Audit this Course**

Audit this course for free and have complete access to all of the course material, tests, and the online discussion forum. You decide what and how much you want to do.

Free to All More about Auditing a Course

OR


Available Now and for a limited time

**Try for a Certificate** 

Looking to test your mettle? Participate in all of the course's activities and abide by the edX Honor Code. If your work is satisfactory, you'll receive a personalized certificate to showcase your achievement.

Free to All More about Honor Code Certificates

Available Now and for a limited time

**Pursue a Verified Certificate of Achievement** 

Plan to use your completed coursework for job applications, promotions or school applications? Then you may prefer to work towards a verified Certificate of Achievement to document your accomplish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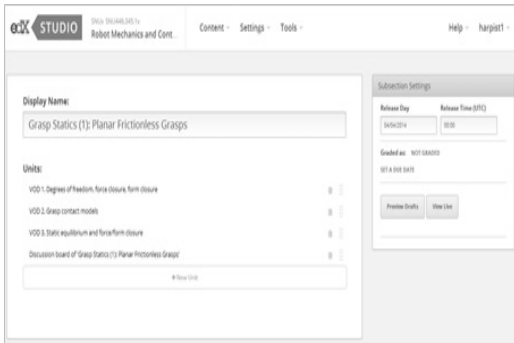
Minimum fee required, see details What is an ID verified Certificate of Achievement?

청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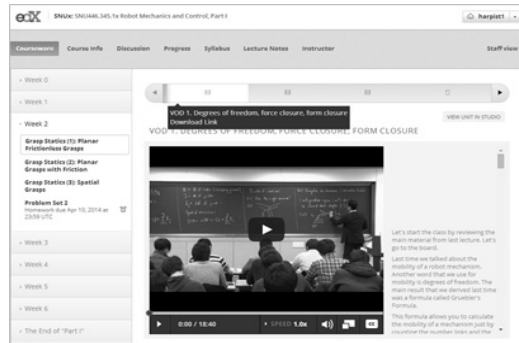
무료 이수증

유료 이수증

- 강좌 전체구성: 저작도구(edX studio) 활용하여 강좌 설계·개발



저작도구에서 주제/활동/자료의 제목과 순서를 설계 및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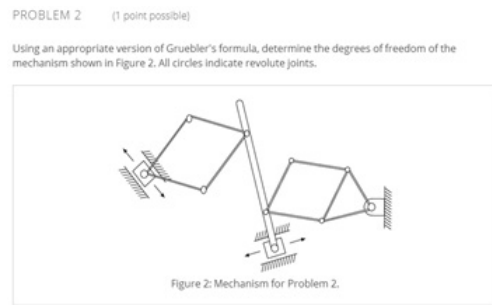


저작도구 설계 및 개발에 따른 학습 플랫폼 화면

- 학습자로 및 학습활동 개발: 동영상 및 자막 개발과 함께 연습문제, 토론, 설문, 과제, 시험 등 설계 및 개발



동영상 및 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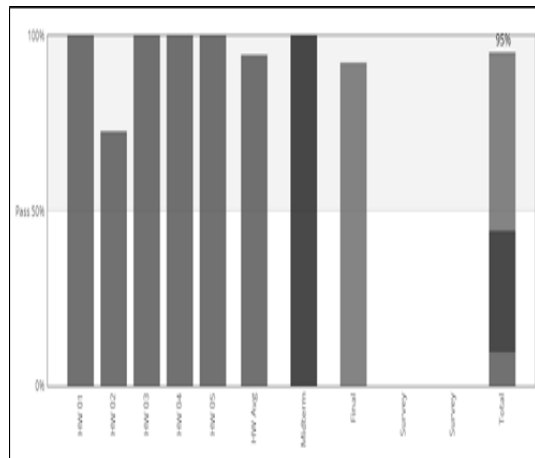


연습문제

- 실제 강좌 운영 및 피드백: 학습 과정 중 다양한 방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및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학습 결과를 참고하여 추후 강좌 운영에 반영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페이스북 개설·운영



우수학습자의 학습활동별 점수 및 최종점수

### □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운영 사례

- **(목표)** ① 국내 교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공동 강의에 활용 ② 글로벌공학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문 및 수업 강의를 맡을 WCU 교수를 포함한 인적 인프라 풀 확보 및 분야별 인력 풀의 체계적 관리로 강의 기획 및 프로그램 효율성 증대 ③ 원격지의 교수와 수강학생 간의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과 콘텐츠 공유가 가능한 9개의 화상강의실 및 최첨단 화상강의 시스템을 구축 하여 오프라인 강의와 동일한 교육 효과 창출



[국내 교육 네트워크 20개 대학]



[국제 교육 네트워크 12개 대학]

- **(추진현황)** ① 글로벌공학교육프로그램을 2010년 2학기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11개 공과대학 총 3,036명이 수강 ② 글로벌공학교육 교과목 중 필수과목 3과목,

필수선택과목 1과목, 자유선택과목 1과목을 포함하여 4과목 이상을 수강한 학생에게는 ‘글로벌엔지니어인증서(Global Engineer Certificate)’ 발급 ③ 2개국 3개교(2010년, 2011년, 2012년도 2학기 서울대-전남대-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Penn. State Univ.)) 간 종합설계(Capstone Design) 교과목 화상강의 진행 ④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여 거점대학에 원격 화상 세미나를 제공하고 공동강의 및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세계 우수 대학과의 연계 구축

개설학기	교과목명	참여대학
2010-2	공학커뮤니케이션(필), 공학윤리와 리더십(필선)	서울대, 전남대
2011-1	공학커뮤니케이션(필), 공학윤리와 리더십(필선), 공학기술과 사회(선), 기술과 창업(선), 공학프로젝트관리(필)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2011-2	공학커뮤니케이션(필), 공학윤리와 리더십(필선), 공학프로젝트관리(필), 기술과 창업(선), 공학경제(선), 공학기술과 사회(선)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2012-1	공학커뮤니케이션(필), 공학프로젝트관리(필), 글로벌공학윤리(필선), 글로벌공학리더십(필선), 창업과 경제(선), 공학경제(선), 공학기술과 사회(선)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2012-2	공학커뮤니케이션(필), 공학프로젝트관리(필), 글로벌공학윤리(필선), 글로벌공학리더십(필선), 창업과 경제(선), 공학경제(선), 공학기술과 사회(선)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2013-1	공학커뮤니케이션(필), 공학프로젝트관리(필), 글로벌공학윤리(필선), 글로벌공학리더십(필선), 기술과 창업(선), 공학경제(선), 디지털아트공학(선), 공학기술과 사회(선)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카이스트
2013-2	공학커뮤니케이션(필), 공학프로젝트관리(필), 글로벌공학윤리(필선), 글로벌공학리더십(필선), 기술과 창업(선), 공학경제(선), 공학기술과 사회(선)	경북대, GIST,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주. 필은 필수과목, 필선은 필수선택과목, 선은 자유선택과목임

공학프로젝트관리



공학영어커뮤니케이션



공학윤리와 리더십(글로벌공학리더십)



공학윤리와 리더십(글로벌공학윤리)



화상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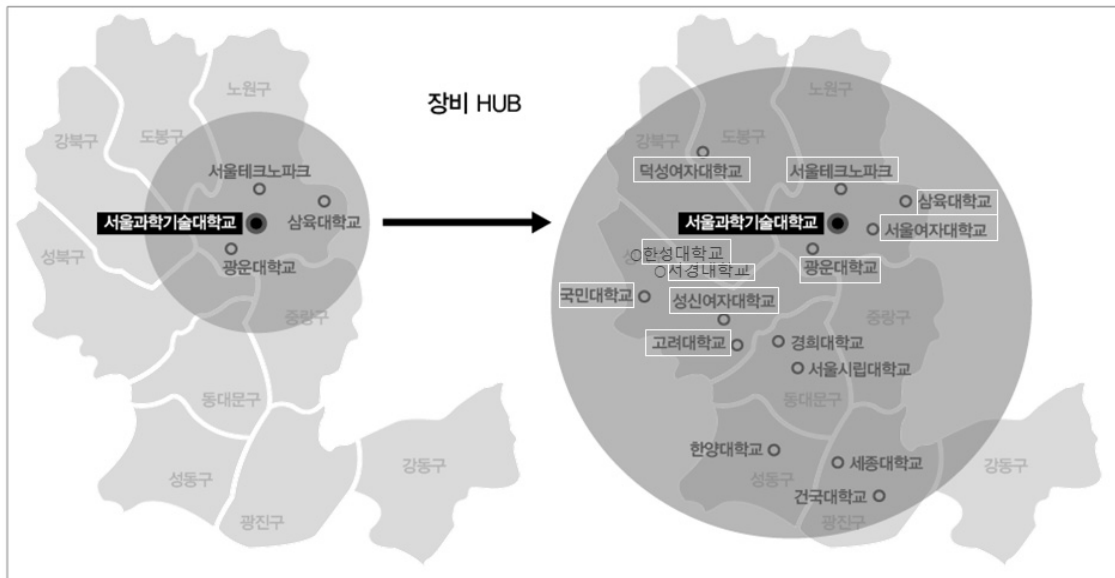
□ 서울시 동북권 대학교 장비 공동활용 사례

- **(목표)** 서울시 동북권 공용 장비 보유 대학을 연계하여 장비 운영 HUB 체제 구축을 통한 ① 보유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효과 ② 각 대학 고가장비 활용도 증대 ③ 각 대학의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장비교육 기회를 타 대학 학생에게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 및 효율성 증대 ④ 세미나를 통한 장비운영인력의 상호교류로 장비운영자의 장비운영력 향상
- **(추진현황)** ① 2014년 1월 17일: 노원구 내 고가장비 보유대학과 장비공동이용 협약체결

구분	주요내용			
운영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 테크노파크	광운대학교	삼육대학교
공동활용 장비 수	80	59	80	17
주요내용	- 각 대학 고가장비 운영 책임자간의 지속적인 상호 협의 - 보유 장비 이용료의 상호 할인혜택 - 장비이용교육 및 세미나의 공동 개최 및 참여			

② 2014년 6월 10일: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의 11개 기관이 장비공동이용 협약 체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노파크, 광운대학교, 삼육대학교, 고려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물 공동 이용 사례

- **(목표)** ① 방학 중 유휴 시설물의 공동이용으로 지방대 학생의 편익 도모 및 우리대학 대외 이미지 제고 ② 학점교류 등 대학교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증진 ③ 여분의 관생실 활용을 통한 수입 증대로 생활관비 인상률 감축
- **(추진현황)** 생활관 240명(남 80명, 여 160명) 지원 및 192명(남 61명, 여 131명) 입주 (6.23~7.31, 6.23~8.30, 8.1~8.30)

학교	지원자(명)	입주자(명)	학교	지원자(명)	입주자(명)
건국대학교(서울/충주)	26	20	부산대학교	2	2
강원대학교	22	20	삼육대학교	2	2
경상대학교	15	12	제주대학교	2	2
한국교통대학교	15	13	중원대학교	2	2
영남대학교	12	9	청주교육대학교	2	2
전남대학교	12	8	충남대학교	2	1
금오공과대학교	9	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1
전북대학교	9	5	한밭대학교	2	1
공주대학교	8	7	건양대학교	1	1
한남대학교	8	8	국민대학교	1	0
순천대학교	7	3	목포대학교	1	0
충북대학교	7	7	부경대학교	1	0
경북대학교	6	6	서울여자대학교	1	1
대구가톨릭대학교	6	5	신경대학교	1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	5	안동대학교	1	1
목포해양대학교	5	5	연세대학교(원주)	1	1
남서울대학교	4	4	중부대학교	1	1
한경대학교	4	3	창원대학교	1	0
신라대학교	3	1	청주대학교	1	1
울산대학교	3	3	춘천교육대학교	1	1
한서대학교	3	2	포항공과대학교	1	1
한양대학교(안산)	3	2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1	1
강릉원주대학교	2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고려대학교(서울/세종)	2	1	한국해양대학교	1	1
관동대학교	2	1	한성대학교	1	1
광주교육대학교	2	2	호남대학교	1	1
광주여자대학교	2	1	홍익대학교(세종)	1	1
대구대학교	2	2	가톨릭대학교	1	0



- **(내용)** ① 방학 중 우리대학 학생들의 입주 후, 여분의 호실에 대하여 지방대 학생들에게 개방 ② 도서관의 협조로 우리대학 도서관 열람실 이용 허용 ③ 어학원의 협조로 우리대학 어학원 개설 강좌 수강 허용 ④ 생활관 규정을 지방 대학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 ⑤ 우리 학생과 지방대 학생 간의 교류를 위한 버디 프로그램 운영 ⑥ 서울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 혜택 제공 ⑦ 대학별 지원 현황을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학점교류 MOU 체결 자료로 활용

지원동기	지원자(수)
학원 수강	121
인턴	24
학업	20
실습	15
취업준비	15
서울 경험	14
대외 활동	8
스터디 참여	5
계절학기 수강	5
미응답	5
문화 생활	3
아르바이트	2
워크숍 참여	1
연구실	1
대학원 준비	1

### 3. 해외 대학자원 공유 사례

#### □ 볼로냐 선언

- **(목적)** 1998년 5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4개국 교육부장관이 ‘소르본 선언’을 한 후 1999년 6월 소르본 선언을 기본골격으로 유럽 지역 내에서의 고등교육 시스템 재편성

※ ‘소르본 선언’의 도입목적은 유럽지역 내 고등교육 학제와 인증에 대한 공동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① 교육프로그램과 자격에 대한 국제적인 투명성 제고, ② 학생과 교원에 대한 국가별 이동성 증진, ③ 유럽지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동성과 통합성 촉진, ④ 학부와 석박사 과정에 대한 공통적인 학위수여 제도 도입

○ **(선언내용)** 유럽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이 함께 추구해야 할 4가지 공동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5가지 실행방안을 제시

※ 공동교육목표: ①유럽통합을 위한 지성과 문화, 사회 및 기술적 토대를 제공해야 하며 대학과 여타 고등교육기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②유럽의 고등교육은 가치를 공유하고 공통적인 사회문화적 공간을 형성해 새로운 밀레니엄 도전을 넘어설 수 있는 인물들을 육성해야 한다. ③유럽은 과거에 지녔던 매력과 경쟁력을 되찾아야 하며 학생과 교원의 자유로운 교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고등교육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하며 평생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 공동실행방안: ①교육체제와 학위에 대한 공통의 준거 마련 ②교육과정 공통시스템은 1단계 학사 3년 전문 직업 관련 학위, 2단계 석사와 박사과정 연계 운영 ③교직원 이동성 확보와 연구업적 인증 ④학생과 교원 이동에 장애요소 제거(교원신분 불이익 제거) ⑤공동협력과 통합 프로그램 확충

□ **에라스무스(European Scheme for the Mobility University Students) 프로그램**

○ **(목적)** 유럽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육내용을 강화하고자 대학교수들과 학생들의 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 교육내용의 공동개발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 **(내용)** ① 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 간 학생, 교원 및 교직원 교류, 협력 교육과정 운영

구분	내용 및 특징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간 교육과정 상호 교류</li> <li>○ 외국 대학에서 3~12개월 기간의 학점 이수</li> <li>○ 교육과정 후 EU 내 자유로운 직업선택 보장</li> </ul>
대학교원 및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진, 초빙된 기업체 전문가, 교직원 교류</li> <li>○ 31개국 27,000명 교원, 전문가 외국 대학에서 강의 5,000여명 교직원 외국기관 연수</li> <li>○ 교원 및 교직원 1일~6주간 교류 프로그램 중 선택</li> <li>○ 대학교원 최소 5시간 강의</li> </ul>
집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주기간 집중 진행되는 협력 강의 프로그램</li> <li>○ 3개국 이상의 교원, 학생, 교직원 참여</li> <li>○ 단위 대학에서는 어려운 전문적인 주제의 교육과정을 다국적 협력으로 진행</li> <li>○ 다학제간 접근 과정, 공동 학위 수여 과정에 권장</li> </ul>
고등교육 기관 다자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와 공동 운영, 통합공동학제(학부, 석박사 과정) 운영, 복수 또는 공동학위수여 교육과정 등에 연간 최대 14,000유로(한화 약 2억2천만원) 지급</li> <li>○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중소기업, 지역의 공·사적 조직)과의 협력체제</li> <li>○ 유럽 내 고등교육기관들의 ICT 수준 차이 극복을 위해 점진적인 ICT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li> <li>○ 가상캠퍼스를 구축하여 실제적인 학생, 교원, 행정가 등의 인적·물적 자원의 기간 간, 국가 간 이동성을 증대 프로젝트</li> </ul>

② 학점인정 및 교환을 위해 EU지역의 준거 마련

구분	내용 및 특징
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목 수강, 논문작성, 실무연수, 실험 수업, 비공식적인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li> <li>◦ 1년 동안 학습량은 1500~1800시간으로 산정</li> <li>◦ 1년 60학점으로 산정, 1학점은 25~30의 학습시간</li> <li>◦ 수업, 세미나, 프로젝트 준비 등 과목수강에 요구되는 총소요시간을 산정하고 학습목표 성취여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통해 학점 부여</li> <li>◦ 학점평가는 표준단위로 A(10%), B(25%), C(30%), D(25%), 그 외(10%)</li> </ul>
UCTS(Umap Credit Transfer Sche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기 이상 최대 2학기까지 수업 참여</li> <li>◦ UCTS를 근거로 상이한 기관별로 졸업이수 학점과 시수를 조율</li> <li>◦ 한 학년의 기준이수 학점 60단위(1학기 30학점)</li> <li>◦ 학점평가는 표준단위로 A(10%), B(25%), C(30%), D(25%), E(10%)</li> </ul>

□ 미국 대학간 교직원 연수 교류 프로그램

- **(목적)** 미국 ACE(American Council on Education)는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기관차원의 대학 간 협력 교직원 교육프로그램인 Fellows Program 운영
- **(내용)** ① ACE(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의 Fellows Program은 한 학기 과정(최소 12주)으로, 교육내용은 주로 다른 대학 멘토의 지도이며, 한 달의 2번 정도 다른 대학기관에 방문하여 주요 행사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 때 비용도 양 대학이 반씩 부담 ② 해당 대학에서 리더십 경험이 있는(예를 들어 부총장, 학생처장, 학교 프로그램 관리자, 학과장 등) 재직 교직원 ③ 멘토링, 현장실습, 대학 캠퍼스 방문, 프로젝트 공동 참여, 전 대학 총장, 교직원, 정부관료, 전문가들과의 토의
  - ※ 멘토링은 협약 대학의 행정가가 멘토가 되어 과제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교직원과의 토의, 멘토-멘티 간의 토의하도록 함
- **(기대효과)** ① 교직원의 대학기관 통찰력 계발 ② 다른 대학의 문제해결 과정 관찰 ③ 전문가 및 교육 지도자들과의 세미나를 통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 ④ 멘토와의 구조적인 교외 경험 ⑤ 대학 총장 및 고위 행정가의 리더십 경험 ⑥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이슈 공유 ⑦ 1,800명 이상의 ACE 네트워크에 소속

## □ 일본 대학 연합 사례

- **(목적)** ① 세계적 현상으로 학령인구 격감, 평생교육 수요 증가, 교육연구 증가, 사회의 교육연구에 대한 요구 및 발언의 강화, 경쟁력 강화 등 대학개혁 추진을 위한 노력, 다양한 형태의 대학 간의 연대 및 제휴를 매개 ② 영국,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대학의 구조개혁이 공급과잉 상태에 빠진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경영위기 타개 내지 효율화라는 서로 다른 2개 목표 실현 ③ 대학은 모두 복합영역분야에 취약한 특징을 갖는 단과대학 성격을 갖고 있어 연합대학 구상으로 약점 극복
- **(도쿄 4대연합)** ① 2001년 3월 히토츠바시대학, 도쿄공업대학, 도쿄의과치과대학, 도쿄외국어대학 결성 ② 대학원 과정의 연합 대학 구상을 복합영역분야에 한정하여 학부 단계로 확대
- **(협력내용)** ① 하나의 대학으로 제공할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을 2대학/ 3대학이 상호 제공하기 위해 “복합영역과정”을 마련하여 상호 편입학을 인정하고 복수의 학위 취득을 공동 사업화 ② 참여대학과는 독립된 관리운영체제를 가지고 각종 위원회와 거의 매일 개최되는 대의원회에서 결정 ③ 연간 3-4회 전공위원회에서 논문심사, 입학, 퇴학 등의 학무업무를 의제화

### Ⅲ. 대학의 생존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

#### □ 프로세스 1 - 대교협 인증 대학(154개교) 중심의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선언

-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점 상호 인정
- 계절학기 공동 강좌 개설
- 대학원 공동강의 개설
- 온라인 강의 자원 공유
- 세계적 자료 공유 시스템 및 연구 장비, 시설 공동(기숙사, 도서관 등) 활용 시스템 구축
- 대학 교직원 인적자원 공유 시스템 구축
- 교수 안식년 제도 효과적 활용을 통한 대학 간 상호 편익
  - ※ “지식나눔”: 안식년 기간에 수도권 대학 교수 전국 강의 제공

#### □ 프로세스 2 - 대학간 자원 공유 협력 시스템 구축

- 대교협 차원의 특별위원회나 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학자원공유를 통한 대학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 대학간 자원 공유 사례 발굴 및 범 대학에 공유 문화 확산
- ‘한국형 불로냐 프로세스’ 구축: 교양과목, 융·복합 과목, 공학, MBA, 법학 등으로 확산
- 대학별 교양과정 등 우수 강의 온라인 지원과 협력체 대학 간 무료 수강
- 대학간 학점 인정 표준 및 준거 마련

#### □ 프로세스 3 -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도

- 대학별 경쟁적 재정지원 방식에서 대학 간 협력 중심의 재정지원 방식으로의 대학재정 지원 방식의 전환
- 대학간 창조적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신설·확대
- 대학재정지원에서 대학 간 연합 프로젝트 운영 등 대학 간 협력을 평가 배점에 대폭 반영

□ 프로세스 4 - 생태계 차원의 『교육·연구 공급망(Education Supply Chain)』 구축

- 고교-대학-사회로의 교육공급 망 구축
- UP, AP 등 고교-대학, 대학-대학원 연계 시스템 강화
- 대학-산업계-사회와의 공급 망 시스템 구축

□ 프로세스 5 - 글로벌 차원의 창조적 협업시스템 구축

- 미국, EU, 한·중·일 간 교육 공급 망 구축
- 한국과 아시아·아프리카 개도국과 교육 공급 망 구축